

稅制의 補整的 操作이 國民經濟安定과 成長에 미치는 影響과 問題點에 관한 分析

裴 福 石*

.....<目 次>.....

- I. 序
 - 1. 租稅와 國民經濟
 - 2. 稅制의 補整的 操作의 必然性과 歷史性
- II. 稅制의 補整的 操作과 經濟安定
 - 1. 經濟安定에 미치는 補整的 稅制
 - 2. 租稅의 自動安定裝置
- III. 稅制의 補整的 操作과 經濟成長
 - 1. 個人所得稅의 成長效果
 - 2. 法人稅의 成長效果

I. 序

財政規模의 擴大에 따라서 租稅負擔率 및 租稅構造의 長期的 變化는 必然的인 措置이며 資本主義諸國의 政府의 主要한 收入源이 租稅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財產所有 혹은 公企業經營으로부터 얻게되는 所得이라든가 外國으로부터 取得되는 贈與등 例外的인 경 우를 별도로 한다면 租稅는 經常收入의 大部分을 占하게 된다. 戰爭이라든가 不況期에 있어서는 政府支出의 相當部分이 民間으로부터의 借入이라든가 通貨의 創出에 의해서 보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正常的인 經濟情勢下에서는 이러한 方法에 高度로 依存하는 것은 民間資本의 蕪積을 沮害하든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危險이 클 뿐만 아니라 國民生產에 대한 政府支出의 比率이 上昇해 가는 過程은 同時에 租稅負擔의 國民所得에 대한 比率의 上昇을 가져오게 된다.

資本主義의 基本的 矛盾은 資本蓄積의 目標가 投資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消費水準向上에 依存하고 있으며 따라서 個個의 企業의 目標의 追求는 마침내 生產力과 有效需要와의 갭을 생기게 하고 이 갭을 縮小하기 위한 企業의 行動이 오히려 經濟全體로서의 갭을 擴大하는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不安定性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資本主義가 資本主義인 한, 이 基本的 矛盾과 內在的 不安定性으로부터 脱却할 수는 없는 것이다.

現代資本主義에서 생긴 構造的 變化는 이 基本的 矛盾과 內在的 不安定性의 循環的 變動의 發現을 상당히 緩和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대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長期的 停滯라는 內在的 傾向의 可能性은依然히 解消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生產能力과 有效需要가 步調를 같이해서 증가한다는 均衡成長의 可能性은 있다고 해도 그 必然性은 역시 없다. 앞으로도 革新投資가 弱化된다면 安定的인 均衡成長의 可能性은 한층 弱해질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상태라면 政府의 役割은 단순히 民間需要를 補整하고 調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經濟의 安定成長을 이끌어 나간다는 積極性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安定成長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適定率의 政府支出을 增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稅政面에 있어서나 또 技術革新의 推進者로서 政府 스스로가 主演者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의 生產的 投資分野의 擴大내지는 可能與否가, 또는 混合體制에 있어서 政府部分의 어떤 擴大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資本主義經濟의 安定과 成長의 決定的인 열쇠로 될 것이다.⁽¹⁾

1. 租稅와 國民經濟

(1) 國民經濟安定에 미치는 租稅의 役割

安定政策의 目標는 多樣하기 때문에 一義的으로 규정짓기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는 景氣過熱期에 볼 수 있는 物價上昇, 國際收支의 惡化를 是正 또는 未然에 防止하고, 景氣沈滯期에 나타나는 失業의 增大, 物價의 下落을 是正 또는 未然에 防止해서 安定成長을 유지하는 것이 目標로 된다.

이상의 政策을 실현하기 위한 政策手段으로서 財政政策으로서는 주로 租稅・國債收入과 財政支出의 規模와 構成內容의 變화가 발생하며 金融政策으로서는 無差別의 政策手段으로서의 利子政策・公開市場操作・預金準備率의 變更에 의한 金融의 量的統制와 質的・選擇的信用統制가 생각된다. 量的制限은 通貨와 信用의 總供給量을 統制하지만 本市場에 직접 關與하거나 資金配分 그 자체를 規制하지는 않는다.

(1) J. Tinbergen, *On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revised ed., 1955.

J. Tinbergen, *Economy Policy*, 1956.

Kirschen et al., *Economic Policy in Our Time*, Vol. I, II and III,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64.

有效需要의 過度의 압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遊休供給能力의 발생은 經濟厚生의 立場에서 본다면 크나큰 損失일 것이다. 景氣調整政策으로서의 安定政策의 편이 擴大成長의 경우 보다 正確한 配慮를 요하기 때문에 財政·金融政策의 重要性은 成長政策보다도 安定政策의 편이 보다 重視된다.⁽²⁾ 그러나 成長政策으로서의 財政·金融政策의 重要性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財政收支의 安定效果는 景氣變動에 의한 所得變化에 관한 稅收의 所得彈力性에 의존하고 있다. 歲入財源이 이 弹力性이 큰 租稅項目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면 景氣變動에 對應해서 好況期에는 自動的으로 增稅效果를 가지며, 不況期에는 減稅效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效果가 이른바 財政의 自動安定裝置(built-in-stabilizer)이며 이것을 보다 景氣感應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所得分布와 稅의 累進度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稅率改正是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며 이것은 內部時差(inside lag)가 크다. 財政支出의 規模와 構成의 变화는 安定效果를 가지며 이른바 財政의 硬直化는 自由裁量的 政策手段인 財政支出의 規模의 變化(縮少)가 곤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동시에 安定效果를 違背하게 되는 것이다.

財政政策의 경우와 같이 安定政策을 目標로 하는 金融政策에 있어서도 政策의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需給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취해지는 金融政策이 財政政策에 비교해서 內部時差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 補整的 effect가 지나치게 強하든가 必要期間 이상으로 계속될(outside lag)지도 모른다. 결국 金融政策은 한층 큰 機動性을 가지기는 하지만 外部時差가 財政支出政策보다 크기 때문에 영향이 持續해서(distributed lag) 오히려 景氣安定效果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2) 國民經濟成長에 미치는 租稅의 役割

成長政策의 目標는 將來消費를 極大로 하기 위한 資本蓄積의 增大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消費보다도 將來消費를 선택하는 時間選擇⁽³⁾과 관련된다. 現在와 將來와의 交換比率이 利子率이니까 經濟成長은 現在消費로부터 일어나는 滿足보다도 乘數效果에 의한 所得의 增大가 將來消費로부터 보다 큰 滿足을 가능케 하는 投資活動에 의해서 齊來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成長政策으로서의 財政·金融政策은 단순히 有效需要의 增大만을 目標로 하는 것은 아니며 投資의 生產的 effect⁽⁴⁾ 결국 供給能力의 增大까지도 目標로 하

(2)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7.

A.P. Lerner, *The Economics of Control*, N.Y. 1944.

(3)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1936.

(4) E.D. Domar,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57.

는 것이다. 公共投資에 의한 外部經濟의 充實, 民間經濟活動條件의 改善이라든가 金融機關에 의한 民間設備投資條件의 整備와 緩和稅政措置 등이 成長政策의 具體的 내용으로 될 것이다.

2. 稅制의 補整的 操作의 必然性과 歷史性

(1) 1930年代 以前의 租稅操作

經濟安定이나 成長을 직접 政策目標로 하기 시작한 것은 第1次大戰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0年代 以前이라는 것은 第1次大戰後의 일일 것이며 이 大戰에 의한 巨額의 軍需品을 소모했고 戰後 復興을 위해 龐大한 物資가 需要되었던 만큼 戰中・戰後의 國際經濟關係는 크나큰 變化를 가져왔기 때문에 資本主義諸國의 生產力이 크게 發展함과 동시에 獨占化는 激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美國은 多量의 金과 巨額의 債權을 保有하는 반면, 飛躍的으로 增大한 生產力を 確保하고 高關稅下에서 輸出超過를 계속해 나왔다. 이런만큼 美國만이 아니라 資本主義諸國의 內外의 變化는 競爭과 이 競爭을 통한 資本蓄積=經濟成長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競爭이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抑壓되었기 때문에 이를反映해서 資本蓄積=經濟成長은 國內外的으로는 크나큰 不均等化를 나타냈으며 世界恐慌도 바로 이러한 結果로 나타난 하나의 現象이었다.

世界大戰後 계속되는 심각한 不況으로부터의 脱出은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며, 물론 그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原因 즉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各國의 力學關係의 變化와 그에 對處하기 위한 獨占強化의 경향, 이것 때문에 各國의 內外의 競爭이 抑壓되고 歪曲되어 資本蓄積=經濟成長의 不均等化가 激化되는 사정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 있다. 이러한 恐慌・不況으로부터의 恢復이라는 점에서 혹은 資本蓄積=經濟成長이라는 點에서 過去 競爭이 이행되어 나왔던 役割을 強化하고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政府의 介入・干渉을 구하게 되며 實現段階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즉 經濟安定이나 成長 그 자체가 직접 政策目標로 되게 되었다.⁽⁵⁾

(2) 1930年代 以後의 租稅의 補整的 操作

資本主義國家의 財政支出은 상당히 龐大해지고 不況에 의해서 國民所得은 減退하게 되어 마침내 租稅收入도 濟減될 수 밖에 없었으나 財政支出을 租稅로 補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増稅措置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不況期에 財政支出政策이 취해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國民所得中에서 蓄

(5)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1.

積(貯蓄=投資)에 충당해야 할 利潤이나 剩餘價值部分이 勞資部分보다도 급속히 增加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競爭에 의한 變化에 의해서 投資가 抑壓 또는 緩和되는 데 의해서 經濟成長이 鈍化하고 또 일단 恐慌으로陷入한 후에는 過剩資本이 잘 整理되지 못하는 事態가 發生하였으며 供給에 대해서 消費나 投資의 需要不足으로 인한 그 갭을 메운다는 意圖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増稅에 있어서는 國民所得中 消費와 投資에 충당할 部分에 대한 課稅는 回避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財政支出의 財源을 課稅에 求하는 것은 所得을 私的 目的으로부터 公的 目的으로 轉用⁽⁶⁾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政策의 本來의 意圖인 消費와 投資의 增加에는 必要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増稅는 國民所得中 貯蓄되면서 投資되지 않는 部分에 대해서 課稅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貯蓄과 投資가 小規模의 個人企業에서同一人에 의해서 遂行될 때와는 달라서 오늘날과 같이 각종의 貯蓄機關을 통해서 別個人에 의해서 행해질 때에는 貯蓄中 投資되는 部分을 그렇지 않은 部分과 分解해서 課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우기 内部留保와 投資라는 形態를 취하는 大企業의 경우에는 貯蓄과 投資가同一人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므로 그 区別은 容易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企業課稅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한 企業의 國際的 競爭을 弱化시킨다는 이유에서 激甚한 反對가 있는 것이 常例일 것이다. 더우기 不況의 過程에서는 國際的 競爭은 激化되어 있기 때문에 理論的으로는 어찌되었든 實제로는 그 反對를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財政支出政策으로 인해서 한층 증대한 支出과 不況에 의해서 減少한 稅收와의 間隔을 增稅에 의해서 메운다는 것은 곤란하게 될 것이며, 財源調達方法은 租稅로부터 公債로 轉換하게 된다. 즉 國民所得中 貯蓄되면서 投資되지 않는 部分을 課稅에 의할 것이 아니라 公債發行에 의해서吸收하고 그것을 政府가 投資나 消費로 轉換케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公債에 의한 財源調達은 既存貯蓄部分을 對象으로 해서 公募에 의해 발행한다는 方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過剩資本이 存在하는 한 國民所得의 增加에 따라서 貯蓄이 증가해도 投資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豫想下에서 먼저 中央銀行引受에 의해서 발행하고 후에 증가한 貯蓄을 對象으로 해서 그 消化를 測定한다는 方法이 실시되게 된다. 이와같이 租稅로부터 公債로, 公債中에서는 公募보다 中央銀行引受에 의한 것으로 財源調達方法이 변화되는데 따라서 財政支出政策을 위한 財源은 容易하게 더우기 大量으로 調達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經濟의 衰退는 鎮止되고 나아가서는 成長으로 轉換된다 해도 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6)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1.

(3) 1945年以後의 租稅의 補整的 操作

앞에서 經濟의 衰退를 阻止하고 成長으로 向하게 하기 위해서는 失業救濟 또는 軍備擴大를 中心으로 하는 財政支出政策이 필요하며 그 效果를 올린다는 것은 자본의 過剩상태하에서 그 過剩部分의 整理라든가 새 投資가 억제되어 緩和될 것을前提로 하는 한, 支出政策의 財源調達에 있어서 公債로의 依存은 不可避한 것이다.

第2次大戰後에도 그와 같은前提가 變화되는 경우에는 財源調達에도 새 方法을 採擇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먼저 戰爭에 의한 資本破壞정도가 크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資本蓄積을 推進해서 經濟安定成長政策을 施行해야 될 國家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이들 國家에서도 最初에는 資本의 破壞등에 의한 生產의 低下로 인해서 稅收가 적었기 때문에 公債를 더욱 이 中央銀行引受로 發行하는 것에 의해서 支出財源을 調達하는 이의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하에서의 公債發行은 즉시 多少를 不問하고 인플레이션을 惹起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인플레이션은 國民負擔에 의해서 資本蓄積을 推進시켜 나왔다. 그러나 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階級對立의 激化라든가 國際競爭力의 弱化라는 不美스러운 사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生產過程에 대한 定着이라는 의미에 의한 資本蓄積 자체가 妨害를 입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資本蓄積이 어느 정도까지 施行된 후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收拾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公債에 의한 財源調達을 租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나 이 租稅는 支出面에서 포착하고 있는 積極的 資本蓄積=經濟成長政策과 矛盾이 되어서는 안되며 可能한 한 이를 補充 내지는 強化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租稅라는 것은 蓄積能力에 逆比例的으로 課해지는 租稅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租稅體系중에서 占하는 比重이 間接稅나 流通稅가 높고 個人所得稅에 있어서는 課稅最低限이 낮고 더 우기 稅率은 下位所得層이 높고 上位所得層은 緩慢하며 그 반면 利子나 配當所得에서 優待받고 있는 즉 法人稅에서 각종 準備金이나 積立金 등이 인정되고 高速償却이나 内部留保에 대한 稅率의 輕減, 投資特別控除등의 特例 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생각했고 또 이를 實現시키기 위한 措置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負擔能力에 比例的으로 賦課하는 租稅가 現在 租稅의 理想이라 할 수 있다. 資本蓄積=經濟成長에 따라서 생기는 租稅의 增收로서 個人所得稅의 課稅最低限의 引上이라든가 應能負擔으로 是正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 所得의 生產은 所得의 分配보다 중요한 것이며 높은 生活水準으로의 完全雇傭을 實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資本蓄積=經濟成長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現實을 보건대 資本蓄積=經濟

成長은 상당히 進步되었고 독일같은 놀랄만한 記錄을 나타내는 國家도 있고 또 그 資本蓄積=經濟成長이 財源調達方法에 의해서 推進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政策目標인 높은 生活水準의 完全雇傭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資本의 過剩상태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現代財政의 役割이 財政支出面에 있어서 資本蓄積을 推進하는 政策과 併行해서 需要創造를 目標로 하는 政策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財源調達面에 있어서 租稅에 의한 方法이라야 된다는 생각과 公債에 의해야 된다는 方法이 實現段階로 移行되고 있다는 것도 忘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같이 第2次大戰後에 있어서 財政支出政策에 두가지 方策이 있는 것과 같이 財源調達方法에는 두가지 方法을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現實은 第2次大戰에 의해서 資本이 破壞되고 生產力이 一時 低下된 國家에만 適用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美國같은 富國에 있어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第2次大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資本蓄積을 目標로 하는 財政支出政策과 租稅에 의한 財源調達政策이 한 結合體를 이루며 國民經濟安定과 成長이라는 現代國家의 使命을 完遂하기 위해서 各國은 支出增大·稅收重壓·公債多額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II. 稅制의 補整的 操作과 經濟安定

1. 經濟安定에 미치는 補整的 租稅

現 資本主義經濟는 그 自律性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所得의 變動이 激甚하며 이 變動으로 因한 財政의 收支도 역시 激變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現代 財政의 役割은 資本主義의 變動을 自動的으로 緩和하는 裝置로서의 機能인 自動安定裝置理論과 補整的 政策의 機能으로서의 補整的 租稅政策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補整的 租稅政策을 먼저 논하고 다음 自動安定裝置에 論及해야 되겠다.

租稅의 徵收는 大小를 不問하고 景氣動向에 대해서 영향을 가져오는 이상 이것을 意識的으로 景氣調整目的을 위해서 運用하는 편이 希望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租稅는 國家가 收

(7)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入을 올리는 이외에 여러가지 영향을 國民經濟에 미치는 것이다.

租稅徵收의 意識的 目的을 歲入에 限定한 古典學派가 있었는가 하면 또 租稅의 副目的을 보다 重要視한 바그너(A. Wagner)以後의 여러 學者들도 있었으나 이러한 租稅의 영향이 政府에서 願했든 안했든, 일어나는 以上은 오히려 이것을 意識해서 統制의 目的에 사용하는 편이 賢明하다 할 수 있다. 여러 學者들의 말과 같이 經濟社會가 成熟될수록 公共政策의 必要性이 切感해 진다. ⁽⁸⁾

(1) 景氣調整的 租稅措置

(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補整的 租稅

課稅는 一般物價의 등귀를 억제하는 有力한 手段이다. 好景氣에 있어서는 生產에 靠り가 생기고 또 任意의 生產制限에 의해서 社會의 購買力이 消費財나 投資財의 生產을 超過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갭이라하고 過剩資金은 새로운 銀行의 信用創造(貸付), 通貨의 印刷, 過去의 賦蓄資金을 사람들이 使用코자 하는 등 通貨·銀定計定의 流通의 增加로부터 오게 된다. 可處分所得의 과잉이 物價를 引上케 하는 것을 防止하는 하나의 方法은 増稅에 의해서 消費者 및 事業의 支出를 削減하는 것이며 政府는 增加된 稅收를 經常支出에 使用해서 公債의 必要를 減少하고 또 公債를 償還하는 것이 可能하며 인플레이션이 심한 때는 累進原理에 따르는 增稅가 한층 有利하다.

물론 인플레이션抑制의 效果는 租稅種類에 따라 달라진다. 事業稅나 超過利潤稅는 어떤 종류의 需要가 非伸縮의이기 때문에 購買者에게 轉嫁될지도 모른다. 또 物價가 등귀하면 政府나 私的支出이 增加해서 購買力이 減少되거나 암을지도 모른다. 특히 源泉徵收나 個人所得稅가 인플레이션의 抑制手段으로서 有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高率課稅를 행하면 經濟活動의 創意를 해칠 우려가 있다. 또 高率所得稅는 勞動組合을 刺戟해서 賃金引上이나 生產費의 등귀를 가져오므로 貨幣流通을 빠르게 하고 事業을 위한 借入增加 賦蓄減少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또 法人の 留保所得稅는 投資抑制의 效果를 상당히 나타낼지도 모른다. 物品稅는 購買力を 吸收하지만 賃金을 높이고 디플레이션效果를 減殺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抑制를 위한 課稅를 생각할 때는 金融狀態, 價格政策, 勞動組合·經營者團體 등의 壓力, 賦蓄의 習慣, 個人的 創意狀態 등 여러가지 事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디플레이션에 미치는 補整的 租稅

(8) A.H. Hansen,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1941.

J.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不況下에서 失業者가 多數이며 完全雇傭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政府의 支出을 增加하고 減稅措置에 의해서 平常狀態의 支出를 계속하기 위해서 赤字公債을 募集할 수 있다. 물론 不況인 때는 減稅하지 않는다 해도 歲入은 減少하는 것이므로 減稅하면 赤字公債의 募集이 要求되는 것이一般的傾向이다. 大衆의 減稅로 因한 資金은 그들의 포켓속에 들어 있게 되는 것이며 이增加한 資金은 주로 消費에 사용될 것이다. 또 高所得層에 대하는 減稅는 不況인 때는 主로 貯蓄된다. 그러나 貯蓄이 銀行에 遊休資金으로 蓄積되고 債務償還이 行해진다면 減稅도 그다지 큰 不況克服의 刺戟으로는 안된다. 한편 貯蓄이 새로운 資本財에 投資되면 景氣는 好轉된다.

不況期에는豫測이 어려우니까 減稅만으로 事業을 자극하는 것은 어려우나 可能한限 投資를 자극하는 것과 같은 減稅야말로 希望되는 것이다.

한편 大衆에게는 減稅하고 高所得層에 대한 増稅政策은 一部學者들에 의해서 有效需要政策으로 推獎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高所得에 지나친 高率로 課稅하는 것은 貯蓄減少, 投資抑制가 되기 쉽다.

政府의 減稅政策은 經費支出增加政策보다 좋은 點이 있으며 公共土木事業에 대한 支出보다도 減稅의 편이 손쉽게 實行하게 될 것이며⁽⁹⁾ 幼稚產業에 대한 補助政策보다도 오히려 無理가 없는措置가 될 可能성이 있다.

마침내 減稅의 心理的反應은 赤字支出보다도 낫고 또 行政府도 浪費 없이 오히려 節約하게 될 것이다.

이 減稅政策에 대한 反對見解로서 減稅는 富裕層에 有利하며 貧民層에 不利하므로 不公平하다고 主張하는 바도 있다. 高所得層은 減稅에 의해서 생긴 餘裕를 貯蓄해 버리고 事業에 아무런 刺戟이 없을지도 모른다.

好況이 되었다고 해서 再增稅한다는 것은 緊急支出을 切下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2. 稅制의 自動安定裝置

여기서는 現存하는 資本主義財政制度의 安定裝置로서의 構造를 명백히 하고 이것이 下部構造의 變動에 대해서 履行하고 있는 役割을 檢討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定義는 國民所得의 變動에 應해서 自動的으로 發生해 오는 財政上의 剩餘나 赤字가 國民所得의 變動의 振幅을 自動的으로 安定케 하는 役割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9)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1947.

(10) 이 관계를明白히 하면 自動補整의 伸縮性 β 는 $\beta = \frac{\Delta Y - \Delta Y_e}{\Delta Y}$ 로 表現된다. 稅收 T 의 所得彈力性을 E 로서 表示하면 ΔY 는 $E=0$ 로 한 때의 乘數的 所得의 變動을, ΔY_e 는 $E>0$ 로 한 때의 그것

이렇기 때문에 財政의 自動補整的 伸縮性은 주로 租稅를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租稅의 自動補整的 伸縮性의 정도는 國民所得중의 課稅所得의 變動으로부터 생기는 稅收入의 變化에 의존한다. 즉 限界稅率 $\frac{\Delta T}{\Delta Y}$ 에 의해서 规定된다. 그렇다면 政府는豫想所得水準으로부터豫定稅收額을 올리는 것과 같은 稅率을 決定할 必要가 있으며 이점을 고려해서 自動補整的伸縮性은 平均稅率 ($\frac{T}{Y}$)과의 관계에 있어서 取하는 것이 便利하다. 그렇다면豫定稅收額은 法定稅率과 各種의 稅源의 結合에 의해서 取得되며 이 結合에 의해서 所得의 變動에 대하여 여리가지 稅收感應度를 가지는租稅組織이 얻어진다. 그러므로 自動伸縮性은 課稅水準과 所得의 變動에 대하는 選擇稅源의 感應度에 의해서 원을 수 있게 된다. ⁽¹¹⁾

을 나타낸다. E 는 所得의 變化率에 대하는 稅數變化率의 比이며 $E = \frac{\Delta T}{T_1} / \frac{\Delta Y}{Y_1}$ 따라서 E 는 限界稅率을 基準年度의 平均稅率로 나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① 政府支出은 一定, 財와 用役에 대한支出만으로 한다. ② 稅는 모두個人所得稅의 形態로 課한다. ③ 會社의 資本이 없다. ④ 投資水準은 課稅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고假定하면 二期間의 所得變化는 I. 投資 c 限界消費性向 r 平均稅率인 때

$$\Delta Ye = \Delta I + c\Delta Y - c(r_1 Y_1 - r_2 Y_2) \text{ 따라서 } \Delta Y = \frac{1}{1-c} \Delta I$$

$$\Delta Ye = \frac{1}{-c \left\{ 1 - E \left(\frac{T_1}{Y_1} \right) \right\}} \Delta I \text{이며 } \beta = \frac{cE \left(\frac{T_1}{Y_1} \right)}{1 - c \left\{ 1 - E \left(\frac{T_1}{Y_1} \right) \right\}} \text{이다.}$$

移轉의支出을 負의租稅, 企業을個人企業이라고取扱하고 c 를可處分個人所得과企業財蓄과의合計에대한限界消費性向이라고본다면 E 와 T_1/Y_1 을全體로서의稅制에適用해서經濟全體에 대하여自動補整의伸縮性의效果를判定할수가있다. 위의式에서明白한바와같이補整의伸縮性은 c , T_1/Y_1 , E 가各各를수록크다. 따라서自動補整의伸縮性은社會의限界消費性向이주어진다면課稅水準과稅收의所得彈力性에의해서規定되는關係가明白하게된다. E 가增加하는것은企業利潤과같은變動性所得을稅源으로하는稅의稅收比率의增加또는個人所得稅와같은累進稅率을가지는稅로부터의稅收比率의增加를나타낸다. E 의reducing는것은消費稅나財產稅와같은相對的으로感應度가낮은稅에대하는依存度가증大된것을나타내며感應度가높은稅의累進度의減退를나타낸다.

머스그레이브는 1929~1941年間의限界消費性向의平均인 0.65를平均時의限界消費性向이라고하고課稅水準을20%,稅收의所得彈力性을1.5로해서 1946年과1947年の聯邦稅制의自動補整의伸縮性을0.358이라고算定하고있다.

하아트는 ①企業利潤은好況期에는國民所得의約10%이며法人所得率은40%따라서企業의國民所得額과比例의으로變化한다고하면그變動은國民所得의變動의約4%가된다.在庫品의評價損益을調整한後에있어서도利潤은國民所得에대해서比例以上의比率로서變動할것이며이在庫의評價損益은課稅上所得으로서計算된다. 이런사정을고려해보면①法人所得稅의變動은國民所得變動의6~8%로算定된다. ②個人所得稅는好況期에있어서는現在의稅率構造와諸控除規定下에서는國民所得의約10%에達한다. 그러나課稅上控除되는所得部分의變動은國民所得總額의變動보다도安定의이며이에대해서課稅所得의變動은國民所得보다도安定性이낮다. 따라서國民所得變動의12~15%정도의變動이라고算定된다. ③消費稅는國民所得의約8%정도이지만그所得彈力性은낮으니까國民所得變動의3~5%정도이다. 上述을合計해보면25~35%정도로된다. 따라서有効需要의變動에의해서國民所得이變動하는경우全體로서의自動安定裝置는地方諸政府의豫算計定上에30~40億달러의赤字또는剩餘로되고國民所得의變動을100億달러정도로抑壓作用을할수있다.

(1) 安定裝置로서의 個人所得稅⁽¹²⁾

粗收入에서 첫째로 非課稅所得을 빼고 둘째로 所得獲得때문에 要하는 一定費用을 控除한다. 이것을 調整粗所得(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한다. 세째로 寄附金·醫療費등의 控除라든가 이 세째의 控除項目대신에 調整粗所得의 一定率이나 一定額을 控除한다. 네째의 控除項目은 人的控除가 있다. 粗收入에서 이 네가지 項目을 뺀 것이 純課稅所得이며 이에 대해서 綜合超過累進稅率이 適用된다.

(가) 控除制度⁽¹³⁾

이 控除의 絶對額의 變動은 國民所得의 變動과 비교해 보면 安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控除制度는 所得이 變動하는 경우에는 課稅純所得과 稅收를 상당히 變動케 하는 것에 의해 自動安定裝置로서 機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期에 名目所得이 增加하는 경우 控除額이 引下된 것과 같으며 상당수의 低所得者를 新稅網으로 끌게 되며 또 名目所得에도 불구하고 實質所得이 低落하는 既存의 納稅階層에 대해서는 追加的 累進課稅를 施行하는 것에 의해서 控除制度는 消費抑壓的인 機能을 한다는 것이다.

(나) 課稅純所得의 變動

前述한 바의 控除의 絶對額과 비교하면 課稅所得은 一般으로 變動的이지만 課稅所得의 變動性에는 그 所得의 大小種類에 의해서 많은 相違가 있다. 變動性所得을 課稅所得으로 하는 것은 그 適用稅率의 累進性과 함께 所得稅의 自動補整的 伸縮性을 크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個人所得稅가 어느 정도까지 그와같이 變動性所得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變動所得의 平均課稅制度는 自動補整的 伸縮性을 弱化시키고 있다.

(다) 累進稅率

個人所得稅의 自動補整의 伸縮性은 稅源의 構造에 依存함과 동시에 累進稅率 構造에도 의존한다. 個人所得이 增加할 때 增加所得分의 一部 또는 全部는 보다 높은 稅率로 課稅되며 반대로 減少할 때는 한층 낮은 稅率로 課稅된다. 全體로서의 效果는 所得이 增加(減少)할 때 稅收는 比例以上의 比率로 增加(減少)하고 可處分所得은 比例以下의 比率로 增加(減少)

(11) R.A. Musgrave, and M.H. Miller, "Built-in Flex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48, pp. 122-128.

R.A. Musgrave, *Fiscal Policy in Prosperity and Depression*.

E.E. Hagen, *The Problem of Timing Fiscal Policy*.

A.G. Hart, "Monetary Policy for Income Stabilization", in *Income Stabilization for a Developing Democracy*, 1953, pp. 309-29.

(12) G.H. Brownlee and Edward D. Allen,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1954.

(13) W. Vickrey, "Adjustment of Income Tax Schedule for Small Incomes", in *Federal Tax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pp. 352-353.

하는 것에 의해서所得의變動을緩和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個人所得稅의稅源이國民所得과同一한比率로變動하는 경우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 源泉徵收와申告課稅

現在個人所得稅收入의 2/3는源泉徵收이며 이制度가導入되기前까지는課稅所得의變動과稅收의變動間에는시차가있었다. 즉當該年度의稅負擔은前年度의所得에의존하기때문에現年度所得課稅의경우와비교하면때에따라서는所得이減少할경우에課稅의累進性이높아지는경우가생기고所得이증대할때에는累進性이稅法에따라오히려弱化되기도한다.

2次大戰以前의舊制度는不況과好況에있어서可處分所得의騰落을激化하고所得稅의自動補整的伸縮性을減虧된것이다. 그러나新制度는所得의變動과稅收의變化사이의時差를短縮하며財政上剩餘가생기는高所得水準에있어서는稼得된所得을可能한限빨리稅로徵收하고保藏化하는것에의해서인플레이션抑壓的作用을다하고財政上赤字가생기는디플레이션期에는稼得된所得을될수있는대로빨리徵稅하고保藏期間을short缩해서政府支出로有效需要化한다. 이와같이新制度는舊制度에比해서所得稅의自動補整的伸縮性을높이고있다.

(2) 安定裝置로서의法人所得稅

(가) 稅源의變動性

法人所得稅의自動補整的伸縮性은주로그稅源의變動性에의존하는데,課稅所得算出의基本的過程을보면다음과같다.

$$\text{當期賣上高} - (\text{期初在庫額} + \text{當期購入額} - \text{期末在庫額}) = \text{賣上粗利益額}$$

$$\text{賣上粗利益額} - (\text{減價償却費} + \text{其他經費}) = \text{課稅所得}$$

이러한稅源은景氣變動의全局面에걸쳐서國民所得·個人所得合計額·個人消費支出合計額과비교하면극히變動的이다.法人稅는比例稅에있어서도그自動補整的伸縮性은크며法人稅는變動的所得을稅源으로하는것에의해서自動補整的安定裝置로된다.

(나) 在庫資產의評價

在庫資產의評價方法에서볼수있다.一般企業은期末在庫資產을先入先出法(first-in first-out)으로써評價하고있지만이評價method에의할때物價上昇期에는在庫品의評價益(inventory profits)이생기고物價下落期에는在庫品의評價損(inventory loses)이나온다.後入先出法(last-in first-out)에의한評價method과비교하면前者(評價益)의경우에는利益이過大하고後者(評價損)의경우에는損失이過大히表示된다.이런損益은모두課稅所得에

포함되기 때문에 取得原價評價方法은 인플레이션期에는 稅源을 擴大해서 稅收를 激增케 하고 디플레이션期에는 稅源을 縮少해서 稅收를 激減케 함으로써 法人所得稅의 自動補整의 伸縮性을 높이게 된다. 다시 好況期의 以上과 같은 稅源의 擴大는 企業의 現金상태를 壓迫하고 企業의 行動을 慎重케 하는 것에 의해서 投資를 남겨두고 不況期에는 以上과 같은 評價方法에 基因된 稅의 輕減은 企業의 現金상태를 緩和하고 마침내 安定化의 結果를 나타낸다.⁽¹⁴⁾

(다) 減價償却

固定設備의 減價償却制度이다. 固定資產의 傷却期間의 自由選擇制는 好況期에 傷却을 集中케 하는 것에 의해서 好況期의 課稅所得이나 稅收를 減少케 해서 法人稅의 自動補整의 伸縮性을 減하지만 耐用年數가 法定되어 年償却額이 決定되었을 때 이를 稅法上으로 말하면 高利潤年度에 있어서도 法定償却範圍額內에서만 控除된다. 傷却控除後의 課稅所得으로부터 法人所得稅에 의해서 吸收되는 額은 增大하고 前制度와 비교하면 法人稅와 自動的 伸縮性은 增大한다. 또 이 制度에 있어서는 利潤年度에는 既定의 傷却控除를 할 수 있으나 損失年度에 있어서는 傷却控除를 利用하지 못한다. 利益年度에서도 그 課稅所得이 낮은 경우에는 傷却不足이 될 可能성이 있다. 이 결과 가령 經濟變動이 激甚하고 景氣變動의 周期를 10년이라고 할 때 그 중 5년의 損失年度가 포함되는 경우 耐用年數가 10년이라고 法定되었다고 하더라도 完全償却에는 15년이나 그 以上的 期間을 必要로 하게 된다.

여기서 企業家는 設備投資를 決意할 경우 投資할 設備의 耐用年度에 대해서豫想損失年度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稅法上的 耐用年度는 企業의 實際上의 全額償却期間보다도 긴 것이 보통인데다가 또 損失年度에 傷却控除가 利用될 수 없다면 稅法에 의해서 制約되는 傷却期間과 實際上의 傷却期間과의 差는 점점 擴大해서 그 결과 投資誘因은 弱化된다. 이와같이 耐用年數의 實質的 長期化는 장래 不況을豫測해서 好況年度에 投資를集中케 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經濟變動의 幅을 緩和하도록 作用한다. 한편 傷却不足의 移越이라든가 加速度償却(accelerated depreciation)등에 대하는 要請을 생기게 할 때 이런 制度는 法人所得稅의 自動伸縮性을 弱化케 하는 要因으로서 作用케 된다. 先入先出法에 의한 在庫資產의 評價가 激甚한 物價變動에 있어서 損失이 過大하다면 같은 論理가 固定資產의 傷却에 대해서도妥當할 것이다. 景氣變動이 激化하는 것을前提로 한다면 인플레이션期에는 固定資產의 取得原價를 基礎로 하는 減價償却是 過小償却으로 되어 課稅所得은 過大하게 表示된다. 디플레이션期의 傷却是 過大償却으로 되어 課稅所得을 過小하게 表示하

(14) R. Goode, "The Corporate Income Tax in a Depression", in *Policies to Combat Depression*, pp. 150-158.

던가 損失을 過大하게 表示한다. 好況期에는 稅가 急增하고 디플레이션期에는 稅가 急減하든가 稅의 返還이 增大하는 것에 의해서 現在償却方法은 法人所得稅의 自動的 伸縮性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다. 景氣循環의 周期에 있어서 激甚한 인플레이션期가 오래 계속되면 減價償却充當金으로서는 同一 設備를 再取得할 수 없게 되고 심한 디플레이션期를 오래 계속하게 할 때는 過大償却이 될 것이다.

(라) 損失의 返戻

損失의 返戻制度란 企業의 所得이나 損失의 計算을 單年度에 限한다면 安定的 所得을 가지는 企業과 비교해서 變動的 所得을 가지는 企業은 稅負擔上 不利한 것은明白하다. 가령 A企業은 第1年度에 200萬달러의 利益이 생기고 第2年度에 100萬달러의 損失을 보게 되며 그의 兩年度의 利益合計額은 100萬달러인데 대해서 B企業은 兩年度 모두 50萬달러의 利益을 올리고 損失의 返戻가 稅法上 認定되지 않는다면 A, B의 2年間의 純利益은 同額이지만 B는 A의 2倍의 稅負擔을 하게 된다. 損失의 返戻라는 것은 先行年度分의 申告書記載所得額에서 現年度의 缺損을 差引하고 先行年度의 稅額을 새로 算出해서 既納稅額과의 差額을 返戻하는 制度이며 現在 前2年의 返戻가 인정되어 있다. 이 制度는 好況年度에 納付한 稅를 不況期에 返戻하는 限에 있어서 自動伸縮性을 높이는 것이다. 또 事業活動이 下降하고 轉回하는 것과 같은 경우 運轉資金의 缺乏에 고민하는 企業家에게 資金을 供給하는 것이 되며 不安定한 時期에 大企業이 大規模投資를 하려고 하는 데 安心을 주게 된다. 가령 投資에 의해서 損失이 생긴다 해도 缺損이 返戻가 可能하기 때문이다.⁽¹⁵⁾

(마) 失業報償制度⁽¹⁶⁾

이것은 雇傭者에 대해서 失業報償稅를 徵收해서 失業報償金을 積立하고 勞動者가 失業한 경우에 이 基金으로부터 定額의 報償手當을 支給하는 制度이다.⁽¹⁷⁾

(3) 安定裝置로서의 消費稅

內國消費稅 全體의 自動伸縮性은 課稅物品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에 依存한다. 消費支出의 變動率은 國民所得의 그것보다 대단히 적다. 그러므로 稅源으로서는 그다지 좋은 自動補整的 作用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一般賣上稅, 去來稅, 附加價值稅 혹은 多數의 重要消費財를 포괄하는 消費稅는 政府의 中요한 財源이 되고 있다. 廣義의 消費稅는 個人所得稅와 함께 民間消費水準을 統制

(15) 法人稅制에 있어서 綠色申告를 條件으로 還拂하고 있다.

(16) Galbraith,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17) The Report of the CMC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 *Money and Credit: Their Influence on Jobs, Prices, and Growth*, 1961, p. 127.

하는 有力한 手段임에는 틀림없으며 消費稅率의 變更에 의한 消費財價格水準의 變化가 實質可處分所得을 变動시키는 것에 의한 效果로 나타나며 所得의 實質的 購買力에 대한 消費者의 錯覺과 消費稅의 代替效果를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또한 物價나 賃金에 대하는 副次的 效果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물론이다.

消費의 購入이나 賣上에 대해서 課하게 되는 稅의 補整的 操作의 效果를 검토해 보면 現在 우리 나라에서도 間接稅收入이 稅收總額의 7割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며 그 大部分은 酒稅, 挥發油稅, 專賣益稅 및 關稅 등이다. 物品稅는 다수의 消費財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稅額은 年平均으로 國稅收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稅收의 대부분은 耐久消費財의 賣上으로부터 얻고 있다. 이러한 稅制下에서는 消費稅는 補整的 政策의 무기로는 그 다지 적당치 못하다.

(가) 消費稅의 轉嫁

消費稅의 補整的 操作의 效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稅의 轉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補整政策으로서 消費稅의 稅率이 인상되는 것은 인플레이션期에 있어서이며 그것이 引下되는 것은 디플레이션期에 있어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生產物市場의 需給狀態를 생각한다면 生產物單位當 消費稅額의 변화는 비교적 확실히 價格水準에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前提下에서는 消費稅率의 補整的 操作이 民間投資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實質消費需要의 증감으로 인한 間接的 effect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은 實質消費支出에 대하는 第1次的 衝擊的 effect에 관한 문제이다.

(나) 消費稅의 所得效果

消費稅가 消費支出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經路는 몇 개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個人所得稅와 다르다.

먼저 所得效果라는 형태로 作用하는 消費抑制效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¹⁸⁾ 個人所得稅는 轉嫁되지 않고 間接消費稅는 完全히 前轉한다는 假定을 세우고 消費와 可處分所得과의 관계는 實質表示에 있어서 安定的이라고 보면 다음의 消費函數를 생각할 수 있다.

$$C^r = \bar{\alpha} + \frac{c(Y^p - T^d)}{p(1+t^s)} \quad (1)$$

p 는 要素價格水準, t^s 는 消費稅率이며 간단히 하기 위해서 消費稅率은 모두 消費財에 대해서同一하다고 가정되어 있다. 따라서 $p(1+t^s)$ 는 間接消費稅가 포함된 市場價格水準에 지나

(18) E.C. Brown, "Analysis of Consumption Taxes in Terms of the Theory of Income Determination", 1950.

지 않는다. 이것을 사용해서 消費支出金額을 디플레이트하는 것에 의해서 얻게 되는 實質消費支出이 C^r 이며, Y^p 는 貨幣表示의 個人所得, T^d 는 個人直接稅額, α 는 所得水準으로부터 獨立의 實質消費額이다. 위식에서와 같이 t^s 의 上昇은 C^r 의 值을 저하시키지만 그것은 市場價格水準의 등귀에 의해서 可處分所得의 實質價值가 저하하기 때문이다. 個人所得稅率의 引上 때와 같이 貨幣表示의 可處分所得($Y^p - T^d$)이 직접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貨幣錯覺(money illusion)이라는 原因이 介入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消費稅率이 t_0^s 로부터 t_1^s 로 변경된다고 가정해 보면 要素價格水準을 不變이라 하고 $Y_0^p - T_0^d$ 에 있어서는 要素費用에 있어서의 消費에 대해서 기여하게 되는 第1次的 效果는 다음 式에서 볼 수 있다.⁽¹⁹⁾

$$\Delta C^r = -\frac{C_0^r - \bar{\alpha}}{1 + t_1^s} \Delta t^s$$

여기서 C_0^r 는 最初의 實質消費額을 나타낸다. 한편 消費稅收入 T^s 에 대한 第1次的 效果는 다음 式과 같다.⁽²⁰⁾

$$\Delta T^s = C_1^r t_1^s - C_0^r t_0^s = -\frac{C_0^r + \bar{\alpha} t_1^s}{1 + t_1^s} \Delta t^s.$$

이상의 兩式으로부터

$$\frac{\Delta C^r}{\Delta T^s} = -\frac{C_0^r - \bar{\alpha}}{C_1^r + \bar{\alpha} t_1^s} \quad (2)$$

이 式은 주어진 可處分所得에 의해서 消費稅額의 그 單位의 变경이 實質消費에 대해서 부여하는 衝擊的 效果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 支出乘數를 적용한다면 消費稅의 乘數效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短期分析에서 이용하는 消費函數는 正의 常數項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2)式의 絶對值는 그보다 작다. 이것은 消費稅의 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實質消費의 第1次的의 變化가 稅收의 變化額을 下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國民所得下에서 同額의 赤字를 가져오게 하는 擴張的 財政政策의 效果는 財貨나 用役에 대한 政府支出의 擴大에 의하는 편이 消費稅의 減稅에 의한 경우보다 한층 강력할 것이다. 그러나 式에 近似한 欲을 부합시켜 보면 消費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C_0^r / \bar{\alpha} = 4$, $t_1^s = 0.2$ 고 가정하면 $|\frac{\Delta C^r}{\Delta T^s}|$ 는 約 0.7에 同等하다.

(다) 消費稅率의 變更

$$(19) \Delta C^r - C_0^r = \bar{\alpha} + \frac{c(Y_0^p - T_0^d)}{1 + t_1^s} - \left[\bar{\alpha} + \frac{c(Y_0^p - T_0^d)}{1 + t_0^s} \right] = -\frac{c(Y_0^p - T_0^d)}{(1 + t_0^s)(1 + t_1^s)} \Delta t^s = -\frac{C_0^r - \bar{\alpha}}{1 + t_1^s} \Delta t^s$$

$$(20) \Delta T^s = C_1^r t_1^s - C_0^r t_0^s = \left[\bar{\alpha} + \frac{c(Y_0^p - T_0^d)}{1 + t_1^s} \right] t_1^s - \left[\bar{\alpha} + \frac{c(Y_0^p - T_0^d)}{1 + t_0^s} \right] t_0^s \\ = \left[\bar{\alpha} + \frac{c(Y_0^p - T_0^d)}{(1 + t_0^s)(1 + t_1^s)} \right] \Delta t^s = \left[\bar{\alpha} + \frac{C_0^r - \bar{\alpha}}{1 + t_1^s} \right] \Delta t^s = \frac{C_0^r + \bar{\alpha} t_1^s}{1 + t_1^s}$$

지금까지의 이론은 消費者가 消費稅率의 變更에 基因하는 實質可處分所得額의 變化를 완전히 의식한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消費者는 租稅 포함의 市場價格의 變化를 의식하지 않고 可處分所得의 實質價值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貨幣錯覺이 支配的이라면 間接消費稅率의 높이에는 관계없이 所與의 可處分貨幣所得으로부터 稅를 포함한 消費支出額은 同一하게 될 것이며 이때 消費函數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C^r(1+t^r) = \alpha + (Y^r - T^r) \quad (3)$$

이 式에 있어서 α 는 (2)式의 경우와 다르고 貨幣表示에 의해서 一定한 戰을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완전한 貨幣錯覺이 支配的이라면 消費稅의 增(減)稅는 그 것과 同額만큼 要素費用에 있어서의 消費를 減少(增大)케 한다. 따라서 消費稅率의 引下에 의한 赤字政策의 效力은 支出增加에 의한 것과 匹敵하는 것이 된다. 또 이 경우에는 消費稅의 增稅에 의한 擴張的 均衡豫算의 乘數效果는 零으로 된다. 물론 全消費者가 貨幣錯覺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貨幣錯覺이라는 原因은 消費稅의 補整的 操作의 有效性을 어느 정도 증강하는 役割을 할 것이다.

(라) 消費稅의 代替效果

消費課稅의 對象으로 되는 財의 종류가 한정되어 더우기 그 중에는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큰 重要消費財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消費稅率의 補整的 操作에 의한 相對價值의 变동은 消費需要의 構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安定政策의 見地에서 보아 희망되지 않는 歸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즉 稅率의 引上에 의해서 억제된 어떤 財에 대한 支出은 대부분 다른 財의 購入으로 향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需要構造의 變化에 의해서 각종의 消費財의 生產能力과 需要構造사이의 不均衡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價格彈力性이 큰 財에 대하는 消費稅率의 操作이 언제든 희망되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耐久消費財는 이러한 타입의 財의 代表的인 것이지만 그 需要是 경기의 變動過程에 있어서 비교적 큰 振幅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종류의 耐久消費財에 課하게 되는 稅率의 補整的 操作은 操業度의 變動이 가장 큰 消費財부문에 있어서의 수요의 安定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인플레이션政策으로서 一般賣上稅의 稅率이 引上되는 경우에는 當期消費內部의 同時的 代

(21) P.A. Samuelson, "Principles and Rules in Modern Fiscal Policy: A Neo-Classical Reformulation", i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pp.157-176. and "Full Employment versus Progress and Other Economic Goals", in *Income Stabilization for a Developing Democracy*, pp. 558-561.

替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消費財의 現在價格과 將來의豫想價格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 現在消費와 將來消費와의 사이에 異時的 代替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景氣對策으로서의 消費稅率의 引上은 비교적 가까운 將來에 있어서의 稅率引下를 가져오기 쉬운 까닭이다. 이런 期待는 耐久消費財등의 購入을 연기시키는 誘因으로서 작용하고 消費函數를 一時的으로 下方으로 이동케 한다. 이에 의해서 一般賣上稅等의 補整的 operation의 效力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異時的 代替效果는 이와 같은 好條件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消費稅가 補整政策의 수단으로서 예상하기 쉬운 것이며 이것 때문에 消費者가 支出을 引上하고 景氣의 過熱化의 위험에 따르게 된다. 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行政當局이 어느 정도 稅率變更權限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消費稅率의 變更措置의 發動을 신속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²²⁾

(4) 結論

綜合해 보면 一般賣上稅와 같은 廣義의 消費稅의 補整的 operation은 民間消費에 대해서 所得稅보다도 못할 것은 없다.

所得階層별로 본 限界消費性向의 差異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消費稅의 부담은 항상 逆進的이라는 점에서 이 결론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民間投資에 대한 直接的 영향은 대략 個人所得稅負擔의 变경의 편이 클 것이다.

이 점도 생각해 보면 兩種의 租稅의 變化가 民間支出에 대해서 부여하는 衝擊的 effect의 強度는 그다지 差異가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消費者物價 및 貨幣賃金에 대한 영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消費稅는 個人所得稅보다도 인플레이션對策의 戰略的 武器로서 劣勢인 것이다. 消費財에 대한 超過需要가 존재하는 상태하에서는 消費稅率의 引上은 항상 被課稅財의 價格水準을 상승케 한다고 예상할 것이다. 이 價格上昇은 패리티計算에 의해서 정해지는 農產物의 支持價格에도 自動的으로 파급한다. 이 경우에 政府支出額도 貨幣賃金率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物價騰貴가 累積的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消費財價格의 등귀는 貨幣賃金率을 상승케 하며 또 物價水準의 上昇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같은 위험은 賃金所得에 대한 所得稅率의 引上의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消費稅의 引上에 기인하는 貨幣賃金率의 上昇은 단순히 勞動組合의 壓力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生計費指數가 상승하는 경우에 賃金率의 調整을 약속하는 에스카레이터條項에 의해서 自動的으로도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2)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Ch. 1. 1959.

III. 稅制의 補整的 操作과 經濟成長

1. 個人所得稅의 成長效果

一般的으로 經濟政策의 目標는 高水準의 個人消費, 公共的 必要의 充足, 經濟成長의 確保, 所得分配에 대한 영향 및 經濟安定目的을 위한 高水準의 雇傭, 國際收支의 均衡, 價格의 安定 등을 들 수 있으며 經濟成長의 促進을 위한 個人的 高消費, 經濟成長의 確保, 經濟資源의 有效使用 등을 들 수 있다. 經濟政策의 一分野로서의 財政政策이 이런 目標를 實現하기 위한 重要的 政策으로서 특히 정부의 活動範圍가 증대하고 있는 現代의 混合體制下의 財政政策의 役割이 极히 重要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는 個人所得稅政策에 의한 成長效果를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租稅政策을 택한 것은 稅制上으로나 實際經濟生活上으로 比重이 크고 國民所得과 가장 관계가 깊으며 또 國際比較를 試圖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各國의 租稅構造의 差異를 하나하나 比較하고 그 效果를 實質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個人所得稅政策은 종래 그 目標의 重點이 安定・成長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成長 즉 蓄積과의 관계에 있어서 個人所得稅를 통한 賯蓄形成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個人所得稅와 賯蓄形成

個人所得稅의 成長效果는 주로 個人投資에 관련되지만 投資函數의 決定은 消費函數인 때보다 쉽지는 않다. 個人所得稅變化의 投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또 經濟成長을 目標로 하는 租稅政策은 稅負擔의 公平을 둘러싸고 經濟安定 및 所得分配를 목표로 하는 租稅政策과 잘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安定인 경우는 租稅構造의 变경이나 소득의 源泉과 使用을 選擇的 差別의으로 취급하고 分配인 때는 稅率의 一般的 水準의 变경을 주된 政策內容으로 하고 있다. 同一所得階層의 個人은同一稅負擔이라야 된다는 水平的 公平原則과 累進稅率表의 調整에 있어서 배려된 垂直的 公平原則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租稅政策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23) Ursula K. Hicks, *Development Finance*, 1965.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65.

이와 같이 個人所得稅政策의 경제성장에 관한目標設定에는 그 자체 設定이 곤란한 부분과 다른 政策目標와 모순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累進構造를 가진 個人所得稅의 높은 稅收彈力性과 個人所得稅收入이 歲入總額에 비교적 큰 比重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個人所得稅政策의 經濟成長促進效果를 경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租稅構造와 財政支出規模를 주어진 것으로 할 때 경제성장은 확실히 歲入規模를 增大케 한다. 財政收支가 赤字라면 이 증대에 의해서 赤字는 감소할 것이고 黑字인 경우에는 剩餘의 增大를 가져올 것이다. 租稅政策의 決定이 經濟成長과 관련되는 것은 ① 가능한 赤字減少分 또는 剩餘의一部나 全部에 대해서 減稅하든가 ② 財政支出의 증대에 使用하든가라는 두 政策문제가 생긴다.

①은 減稅政策이며 그 결과 個人所得稅에 관해서 본다면 消費水準의 上昇과 貯蓄의 形成을 가져올 것이며 ②는 財政規模의 증대로서 이에 의해서 有效需要水準이 상승하고 成長이 촉진될 것이며 이의 效果에 대해서 보면 個人所得稅政策을 成長政策의 一環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個人所得稅의 增加가 가져오는 財政規模의 增大로부터 個人所得稅收의 變化와 政府貯蓄의 變화와의 關聯性이 중요하다.⁽²⁴⁾ 資源의 有效한 使用이라는 見地에서 본다면 政府貯蓄을 經濟成長目的에 投入할 可能성이 크다면 減稅에 의한 民間部門에 대한 資源分配과 함께 歲入增加에 의한 公共部門에 대한 資源分配에 의해서 經濟成長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雇傭水準에서의 貯蓄供給可能量은 가격의 安定과 兩立하는 民間投資水準인 嘅의 貯蓄과 現實의 貯蓄을 所得階層別로 計測해서 兩者의 差를 가지고 個人所得稅에 의한 貯蓄形成의 減少效果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는 먼저 1957年の 課稅前과 後의 所得分布 따라서 稅負擔의 分布를 計測하고 1950年の 階層別로 본 所得・貯蓄關係의 ディテ일을 1957年に 적합시키고 稅負擔이 없다면 階層별로 課稅額으로부터 형성되었을 貯蓄額을 推計하고 있다. 計測結果에 의하면 1957年이 個人上限을 이룬다. 減稅政策의 貯蓄形成效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成長率을 가지는 경제를 생각하면 個人所得稅의 增收를 통해서 財政收支의 黑字(赤字)가 增加(減少)했다고 가정해 보는 경우 政策當局이 이것을 기초로 減稅政策을 한다면 個人에 있어서 所得은 그만큼 증가하니까 그 일부가 貯蓄을 형성하게 된다.

머스크레이브는 稅負擔이 없다고 가정한 所得稅額 33.3달러의 31%에 상당한 10.3달러가 貯蓄의 減少分에 상당한 것이 된다. 이 推定方法의 長點은 階層別所得・貯蓄데이터와 階層別 所得分布데이터가 資料制約上・年次上의 不一致된 점을 제하면 階層別 限界貯蓄率을 推

(24) M.E. Levy, *Fiscal Policy, Cycles and Growth*, p. 54.

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나 國際比較를 하기 위한 같은 計測을 英國과 독일에서는 볼 수 없으며 그것은 階層別課稅前後의 所得分布의 데이터는 알 수 있지만 階層別所得・貯蓄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階層別限界貯蓄率의 推計를 단념하고 基準年度의 個人所得稅構造 그대로 경제성장을 계속한 경우의 稅收額과 實제의 稅收額을 비교하고 그 差額이 減稅政策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머스크레이브의 경우는 實제로는 稅負擔이 있었기 때문에 個人所得稅額이 1957年의 31%에 상당하는 貯蓄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을 명백히 한 데 대해서 以下의 考察에서는 基準年度와 比較年度와의 사이에서 減稅政策이 행해졌기 때문에 差額만큼 個人所得이 증가하고 그 일부가 貯蓄을 형성한 것을 명백히 할 것이다. 그 理論的 背景을 명백히 보면⁽²⁵⁾ 租稅・所得關係 및 所得分布函數가 연속적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t 는 課稅前所得 y 에 대한 課稅額이다. 또

이것에 의해서 n 번째의所得階層의課稅前所得을 나타낸다.

(2)를 (1)에 대입하면

여기서 個人所得稅總額과 個人所得總額을 각각 T_0 , Y_0 로 나타내면

貨幣所得이 상승할 때 그 上昇比率 λ 가 모든 所得階層에 관해서 같다고 가정한다면 所得分布는 不變이니까

따라서 個人所得稅總額 T_λ 와 個人所得總額 Y_λ 는

지금 租稅・所得函數(1) 및 (5)를 指數函數로 표시하면

명백히 β 는 稟稅・所得彈力性이며 각所得階層에 대해서 일정하다. B 는 定數다. (9)를
참조하면 (4)나 (7)은

(25) E.J. Mishan and L.A. Dicks-Mireaux, "Progressive Taxation in Inflationary Economy", 1958.

로 된다. 따라서 經濟成長前後의 課稅額의 관계를 所得分布로부터 獨립한 형태로서

에 의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個人所得의 賦蓄水準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각국의 個人所得稅政策의 특징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12)의 λ 와 β 를 미리 計測하지 않으면 안된다. λ 는 각所得階層에 공통의 「成長率」이다. 여기서 基準年과 比較年의 課稅前個人平均所得으로부터 λ 를 計測했다. 彈力性係數 β 에 대해서는 基準年的 階層別平均所得 및 平均稅額에 이터에서 (9)를 사용해서 計測하였다.

英·獨에 비해서 美國의 彈力值는 약간 작지만 美·英·獨 어느 나라나 彈力值은 극히 안정되어 있다. 각기의 相關係數 및 彈力性係數의 標準誤差로부터 이 상에서 검토에 필요한準備作業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들 計測值에 의해서 個人所得稅의 貯蓄水準에 대하는 效果를 판정해 보면 \hat{T}_x 를 推計할 수 있다. 지금 推計值 \hat{T}_x 로 實際值 T_x 를 나타낸다고 하면 \hat{T}_x 와 T_x 를 비교하는 일은 基準年의 個人所得稅率과 構造가 比較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가정한 경우와 比較年까지의 실현한 個人所得稅別의 變化를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이 差額에다 各國別個人部門의 限界貯蓄率을 곱하면 減稅의 결과 증가한 個人所得으로부터 가능해진 저축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스그레이브의 推定方法은 檢討의 對象이 된 1957年에 만일 稅負擔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貯蓄이 형성했을까, 그리고 그 階層別構成이 어떠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의 推定은 基準年과 比較年에 있어서의 稅負擔의 變化가 전체로서 어느 정도 貯蓄形成에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基準年과 比較年에 대해 보면 美國은 1955年과 1960年, 英國은 1954年과 1959年, 獨일은 1954年과 1957年이다. 또 각각의 λ 의 값은 1.29204, 1.36430, 1.40169이다. 이들 λ 의 값도 各國基準年的 β 및 T_0 로 부터 (12)에 의해서 T_λ 를 구하고 現實值 T_λ 와 對比한 것이 表의 (1)(2)(3)란이다. 美·英·獨 다같이 \hat{T}_λ 의 편이 T_λ 보다 크고 基準年과 比較年 사이에서 각각 減稅가 해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計測結果로부터 판단하는 한 減稅의 規模에는 상당한 差가 있다. 基準年의 個人所得稅收額과 減稅額($\hat{T}_x - T_x$)과의 比率을 보면 5欄에서 美國은 1.9%, 英國은 28.6%, 독일은 45.4%이며 經濟成長率이 높은 독일이 한층 大幅의 減稅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 減稅와 貯蓄形成

	\hat{T}_λ (1)	\hat{T}_λ (2)	$T_\lambda - \hat{T}_\lambda$ (3)	T_0 (4)	T_λ/T_0 (5)	S (6)	S_T (7) ⁽⁶⁾	$S^{(6)}$ (8)	S_T/S (9) ^(%)
美 國(100萬달러)	52,057	51,395	+664	35,748	1.9	0.71 ⁽¹⁾ 0.253 ⁽²⁾	464.0 168.0	20,854 ⁽⁷⁾ 168.0	2.23 0.81
英 國(100파운드)	3,186	2,669	+520	1,819	28.6	0.250 ⁽³⁾	130.0	1,279 ⁽⁸⁾	10.16
獨 일(10億달러)	44.3	33.4	+10.9	24.0	45.4	0.460 ⁽⁴⁾	5.0	20.9 ⁽⁹⁾	23.92

註 : (1) M.A.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1957, p. 215.

(2) R.W. Bodkin, "Income and Consumption", 1959.

(3) L.R. Klein, "The British Propensity to Save", 1958.

(4) G. Mengers, *Ein Ökonometrisches Model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9.

(5) (3)—(4)

(6) 個人貯蓄

(7)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1963.

(8) 同上

(9) 同上

여기서 減稅에 의해서 個人可處分所得의 一部로 되었던 이를 所得追加分중에서 어느 정도의 貯蓄이 되었을까. 그러나 貯蓄額推計에는 큰 困難이 따른다. 첫째로 美·英·獨에 대해서 같은 形式으로 貯蓄函數를 推計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減稅에 의하여 可處分所得의 增加는 一種의 不勞所得 또는 無償所得이지만 같은 不勞所得이라도 그 限界貯蓄率은 다를 것이며 總貯蓄函數의 파라메타로써 얻을 수 있는 限界貯蓄率과도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基準年과 比較年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貯蓄額의 推計에 사용되는 限界貯蓄率이 表 6欄에서는 상당히 留保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限界貯蓄의 選擇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美國의 限界貯蓄率을 두 가지로 표시한 것은 不勞所得의 限界消費率이 대략 0.3(限界貯蓄率은 0.7)이라고 판단한 프리드만(Friedman)⁽²⁶⁾에 대해서 보드킨(Bodkin)은 限界消費(貯蓄)率이豫想이상으로 높(낮)은 것을 표시한 것을 참고로 하려고 했었다. 보드킨의 결과를 인정한다면 減稅의 消費刺戟效果는 상당히 높아져서 租稅政策의 消費戰을 통한 經濟成長效果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美國의 限界貯蓄率은 클라인(Klein)의 데이터이다. 클라인은 貯蓄函數를 契約과 任意로 分할해서 計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個人所得稅의 변화에 의한 貯蓄이므로 緊縮貯蓄의 限界貯蓄率을 채용하고 있다. 독일에 대해서는 美·英과 같이 形態別·所得階層別 貯蓄(消費)函數가 없기 때문에 總消費函數의 파라메터(限界消費率)로부터 限界貯蓄率을 구하고 있다.

限界貯蓄率(表 6欄)에 減稅에 의한 追加所得(3欄)을 곱해서 貯蓄額을 推計한 結果가 第7欄이다. 이 7欄은 絶對額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比較年의 個人貯蓄額과 비교해 보

(26) R.C. Jones, "Transitory Income and Expenditures on Consumption Categories", 1960.

면 第9欄이 되며 減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貯蓄이 個人貯蓄에서 접하는 比重은 美國이 가장 작고 독일이 가장 크다. 프리드만⁽²⁷⁾의 높은 限界貯蓄率을 사용한다 해도 그 比重은 2%強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英國은 약 10%, 독일이 24%이며 減稅에 의해서 個人貯蓄이 대폭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마다 經濟成長過程에서 歲入總額에서 접하는 個人所得稅의 比重이 증대하지 않을 정도로 減稅를 하고 있지만 減稅에 의한 個人貯蓄이 독일에서 특히 크게 표현되는 것은 限界貯蓄率이 크기 때문이며 稅負擔의 增大를 回避하기 위해서 經濟成長이 가져오게 될 自然增收로부터의 減稅分이 원래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限界貯蓄率을 각국이 동일하다고 계산해서 보더라도 減稅에 의한 貯蓄額의 個人貯蓄에 접하는 비중은 독일이 가장 크다.

이상에서와 같이 독일에서는 個人所得稅를 減稅하면 증가한 可處分所得의 13%로부터 24%가 저축되어 減稅를 않으면 政府貯蓄規模을 크게 증가케 할 租稅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美國은 個人所得稅負擔을 일정한 정도로 減稅한다 해도 그로부터 추가되는 個人貯蓄의 比率은 극히 적으며 減稅치 않고 政府貯蓄을 증가시킬 比率도 적은 租稅構造를 가지고 있다.

(2) 結論

이상에서 英·美·獨의 個人所得稅의 成長效果를 보아왔다. 같은 個人所得稅라해도 그 범주는 同一치 않고 比較年度도 總計資料의 制約上 불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政策效果의 判定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留保를 필요로 한다.

英·美·獨은 個人所得稅의 總稅收入중 접하는 比率이 크고 個人所得稅收入의 所得彈力性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個人所得稅를 통한 財政의 自動安定效果는 상당히 有效하다. 個人所得稅의 構造的 伸縮性이 당장에 安定效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構造的 伸縮性을 통해서 個人所得水準을 安定化하는 效果가 가장 큰 나라가 美國이다.

個人所得稅政策의 변화가 個人家計의 投資性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資料上 制約을 면치 못했다. 個人所得稅政策中에서 減稅政策에 의한 可處分所得의 증가가 가져올 貯蓄의 증가에 대해 보면 各國의 個人所得構造가 반영한 것과 같이 보인다. 美國에서는 個人所得稅負擔은 거의 일정한 만큼 減稅해도 個人貯蓄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데 대해서 독일은 상당히 個人貯蓄이 형성된다.

2. 法人稅의 成長效果

資本主義國家의 3個의 代表的租稅는 所得稅·法人稅 및 消費稅로 大別된다. 이 3種의租

(27) M. Friedman, "A Monetary and Fiscal Framework for Economic Stability", 1948.

稅의 補整的 變更은 國民所得水準에 영향을 주는 바 크며 그效果가 미치는 범위는 企業의 投資, 個人의 消費, 可處分所得의 增減, 物價의 變動, 景氣의 緩和, 貯蓄의 促進, 所得의 再分配, 資金의 調達 등 참으로 광범위함은 이를 하나하나 해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중에서 法人稅에 대한 補整的 變更의 效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法人稅의 轉嫁와 所得決定模型을 논하고 다음 民間消費 및 投資에 대한 效果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특히 民間投資에 대한 效果는 收益性效果와 內部資金效果의 둘로 구분해서 검토하겠다. 더우기 法人稅負擔의 變화가 短期的으로 轉嫁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위에서의 考察의 結論에 필요한 修正을 가해 보기로 하고 最後에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副次的效果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高速償却이나 投資控除制度의 補整的 操作의 功績을 명백히 해 보기로 한다.⁽²⁸⁾

法人稅는 國家의 中요한 財源임에는 틀림없으며 그 實效稅率이 50%에 접근된 나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稅率을 補整的으로 변경한다면 法人的 稅引純利潤의 변동을 완화하는 것에 의해서 法人企業投資의 安定化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景氣變動의 가장 中요한 原因은 民間投資의 浮動性에 있지만 住宅建設以外의 分野에 있어서의 民間投資의 大部分은 法人企業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의 效果를 검토하는 것은 中요한 문제이다.

(1) 短期的 轉嫁에 대한 補整的 措置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이 民間支出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價格政策에 대한 短期的效果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傳統的分析에 있어서는 企業利潤에 대해서 課해지는 所得稅는 그 限界稅率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生產物의 供給價格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주장되어 왔었다. 그 根據로는 稅引利潤은 稅入利潤의 增加函數이므로 課稅前利潤을 極大로 할 產出量은 稅引利潤까지도 極大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推論은 完全競爭의 경우뿐만 아니라 獨占의 경우에도妥當하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 接近法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은 企業이 短期利潤의 極大化를 行動目標로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獨占的 企業에 관해서는 이 전제는 현실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短期利潤을 극대화하는 價格政策이 高率稅引利潤率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潛在

(28) V. Philips, *Pubic Finance and Less Developed Economy*, 1957.

P.T. Bauer and B.S. Yamey,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1957.

W.A.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55.

U.K. Hicks, *Public Finance*, 1955.

의인 競爭者의 市場에 대한 參加可能性이 강화됨과 동시에 價格統制와 같은 公的 干涉이 행해지는 위험을 동반한다. 더우기 일시적인 高利潤에 의해서 勞動組合의 賃金引上 要求를 자극한다는 것은 賃金의 下方硬直의인 경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獨占企業이 短期利潤을 극대화하는 水準以下로 供給價格을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法人稅率의 引上에 의한 稅引利潤率의 低下는 企業의 價格政策의 變動을 促進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寡占의 市場構造下에서는 法人稅率의 변화가 價格水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法人稅率이 인상되는 경우 供給價格을 인상하여 이에 따라서 市場價格水準이 상승할 可能性이 있다.

이상과 같이 獨占的 혹은 寡占的인 市場構造下에서는 法人稅率의 補整的 引上이 실시되면 주로 生產物供給價格의 變更를 통해서 증가한 稅負擔이 購買者에게 전가될 가능성성이 인정된다. 물론 稅引利潤이 不變으로 유지된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部分的 轉嫁의 可能性이 적지 않다. 最近 크라지자니아크(Krazyzaniak)나 머스크레이브에 의하면 法人稅負擔의 增加는 100% 短期的으로 전가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分析에서는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이 價格政策에 영향을 주지 않는 傳統的인 케이스를 먼저 열거하고 다음 短期的 轉嫁가 야기되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9)

(2) 所得決定에 대한 補整的措置⁽³⁰⁾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이 民間支出에 끼치는 效果를 分析하는 것은 短期的인 轉嫁의 可能性을 無視하는 한이 있더라도 個人所得稅의 경우보다 복잡하다. 그 이유는 法人企業의 投資決意를 左右하는 諸要因은 '지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利用해 왔던 所得決定模型을多少나마 現實化하는 것에 의해서 이 問題를 검토해 본다면 民間投資는 可處分所得의 函數라고 보아 個人所得稅와 法人稅를 區別함과 동시에 民間投資는 法人企業에 의해서 實시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法人的 稅引利潤의 函數라고 생각한다. 또 稅引利潤의 一部는 内部留保로 되다고 생각한다.

세 模型은 다음 方程式體系에 의해서 構成된다.

(29) M. Krzyzaniak and R.A. Musgrave, *The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1963.

(30)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단, Y^h =個人所得, T^h =個人所得稅, Y^c =稅及法人利潤, T^c =法人稅, t^h =個人所得稅率, t^c =法人稅率, T =總稅收, α =限界法人所得率, S^c =法人留保, s^c =限界法人貯蓄性向, Q 와 N 은 常數, 其他 記號 從前대로.

(2)式은 消費函數이며 消費는 可處分個人所得 ($Y^h - T^h$)의 一次函數라는 哲理의 생각을 하고 있다. (3)式에서는 民間投資가 稅引의 法人所得 ($Y^c - T^c$)의 一次函數라고 假定된다. 이러한 假定은 稅引한 法人所得에 依存하는 法人留保는 法人投資를 左右하는 中요한 要素이며 또 稅引利潤은 投資純收益의豫想의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 (5)~(7)은 어느것이나 定義式이며 簡單化를 위해서 個人所得稅나 法人稅도 比例稅라고 가정되어 있다. (8)式은 稅포함 法人所得 Y^c 와 Y 의 關係를 表示한다. Y 에 대하는 Y^c 의 比率은 Y 의 水準과 같은 方向으로 變化할 경향이 있으므로 $Q > 0$ 로 가정할 것이다. 물론 이 式은 法人稅는 短期的으로는 轉嫁되는 것이 아니라는 暗默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9)式은 個人所得 Y^h 에 關한 定義式이다. 最後의 式은 法人留保 S^c 를 稅引法人利潤의 函數로 定義한다. 이 式에서 N 은 配當額中 所得水準으로부터 獨立된 部分을 나타낸다. 當然히 $1 > s^c > 0$, $N > 0$ 라고 가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以下의 分析은 單純화를 위해서 物價水準은 變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Y^h 의 값을 구해 보면

$$Y^h = (1 - u\alpha) Y + uQ + N; \quad u = t^c + s^c(1 - t^c)$$

이것을 T^* 의 값과 함께 (2)式에 대입하면

$$C = \alpha + c(1-t^h)[(1-u\alpha)Y + uQ + N]$$

또 Y^c 와 T^c 의 값을 (3)式에 대입하면

$$I = e + h(1-t^c)(\alpha Y - Q)$$

이와 같이 알게 된 C 와 I 의 값을 $G = \bar{G}$ 와 함께 (1)式에 대입해 Y 의 균형값을 구할 수가 있다.

$$Y = \frac{\alpha + c(1-t^b)(uQ+N) + e - h(1-t^e)\alpha + G}{1-J} \dots \dots \dots (11)$$

단 위 式에서 $J=c(1-t^h)(1-u\alpha)+h(1-t^c)\alpha$ 이며 이것은 國民所得에 관한 限界支出性向에 지나지 않는다. 예에 따라서 $1>J>0$ 이며 分子가 正이라고 가정하면 J 의 值은 t^h 혹은 t^c 가 커질수록, c 나 h 가 작을수록, 또 s^c 가 큰 경우일수록 한층 작게 된다. 支出乘數는 $\frac{1}{1-J}$ 에 同等하므로 이런 경우일수록 經濟의 安定性은 증대한다. 그 대신 政府支出의 乘數效果도 물론 작아지게 마련이다.

위 式에서 法人稅率의 變化가 Y 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이 式에서 $(\alpha Y_0 - Q) \Delta t^c$ 는 國民所得 Y_0 에 있어서 t^c 의 變更에 의해서 얻게 되는 法人稅收의 變化額을 나타낸다. 이것을 $(\Delta T^c)^*$ 로 표시하면 民間投資는 $-h(\Delta T^c)^*$ 만큼만 變動한다. 또 配當된 金額이 $-(1-s^c)(\Delta T^c)^*$ 만큼 變化하므로 民間消費는 $-c(1-t^k)(1-s^c) \times (\Delta T^c)^*$ 만큼 增減한다. 이를 合計가 法人稅의 補整操作의 총격적 效果이다. 이에 대해서 세 法人稅率 下의 支出乘數 $\frac{1}{1-J'}$ 를 適用하면 最終的인 Y 의 變化額이 瞬即될 것이다.

(12)式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關係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이 有效한가의 여부는 C 및 I 에 대하는 衝擊의 效果의 크기를 評價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消費에 대한 補整的 措置

租稅에 의해서個人이 얻고자 하는所得의犧牲이 커지면國民은 누구나所得獲得에 대한慾求가減少될것이면勤勞나經營에 대한努力도衰退할뿐만 아니라 바로經濟成長에 대한沮害的要因으로되어결국租稅가個人의努力에 미치는영향은租稅의輕重에 달려있다할수있다.⁽³¹⁾

이제 消費階層을 分離해서 논해 보면

- ① 最低所得層은 살기 위해서 貯蓄을 하지 못하며 그들에 대한 어떠한 稅金이라도 그들의 消費支出를 減少한다.
 - ② 一般所得層은 消費를 위해서 支出도 하고 貯蓄도 한다. 그러나 貯蓄은 비교적 非伸縮的이다. 이들 階層은 保險料, 借金의 支拂, 小額의 資金을 만들기 위해서 定額의 貯蓄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貯蓄이 非伸縮의이니까 消費支出은 비교적 伸縮의이다.
 - ③ 農家所得層은 消費支出를 比較的 一定케 하기 위해서 貯蓄편이 伸縮의이다. 이와 같은

(31) A.H. Hansen,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1947.

Brownlee and Allen,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1954.

C. Shoup, "Taxation and Fiscal Policy," in *Income Stabilization for a Developing Democracy*.

R. Goode, *The Corporation Income Tax*, 1951.

E.C. Brown, *Analysis of Consumption Taxes in Terms of the Theory of Income Determination*, 1950.

家計의 所得을 課稅로 減少시키면 消費支出보다도 貯蓄이 減少한다. 家計所得이 클수록 傳統의 生活水準에 固着하는 경향이 있으며 所得이나 生計費를 貯蓄으로 調節한다.

④ 高所得層에의 擔稅는 消費支出이나 貯蓄에 아무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經濟成長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中小所得者의 負擔으로 되는 租稅는 一國의 貯蓄보다도 消費減少로 因해서 經濟成長에 沮害的效果만이 增大되어 담배·酒類의 稅金·小賣稅등은 이 영향을 받으며 小農의 財產稅나 小所得者的 負擔으로 되는 所得稅도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租稅는 이와같이 消費支出에 使用된 所得을 吸收해서 消費支出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別途의 經路를 蹤아서 消費에 영향을 준다.

商品稅는 轉嫁에 의해서 商品價格을 높이고 販賣量을 減少시키며 때로는 이 商品에 支出되는 總額이 減少한다.

一般物品稅나 販賣稅는 大部分의 消費財의 價格을 높여서 消費性向을 減少시키고 所得의 消費 및 貯蓄에 대한 分配를 變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轉嫁되지 않는 法人稅의 増減稅가 民間消費에 끼치는 衝擊的 效果는 稅額의 變化보다는 한층 작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民間消費에 대하는 영향을 減衰케 하는 3個의 關門이 있다.

① 稅引法人利潤의 變化額의 大部分은 内部留保의 増減에 영향을 미칠 경향이 있다. 위 式에서 s^e 가 그에 가까운 值를 취하는 것이라고 推測된다. 이것은 現代의 大企業에서는 配當率의 安定性을 確保코자 하는 경향이 대단히 強하기 때문이다.

② 配當의 増減額의 大部分은 株主의 個人所得稅負擔의 變化에 의해서 吸收되어 그 純所得의 變化는 한층 작으며 그效果는 株主層의 實效限界稅率이 높을수록 뚜렷하다.

③ 稅引配當所得의 變化의一部는 株主의 貯蓄의 増減이라는 形態를 취하여 殘金만이 消費의 變化額으로 된다. 配當所得의 限界貯蓄性向은 株式所有가 高所得層에 集中되어 있는 點에서 생각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推測된다.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의 民間消費에 대한 第1次的效果는 이상 3個의 關門에서 減衰하기 때문에 비교적 低所得層에까지 미치는 個人所得稅의 増減稅의 경우와 比較한다면 한층 弱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模型에서 個人所得稅는 比例稅라고 가정되어 限界消費性向은 各所得階級에 있어서同一하기 때문에 諸點에서 明示되어 있지 않은 點에 注意해야 된다. 가령 $s^e=0.6$, 株主의 限界個人所得稅率 $t^{h1}=0.3$, 配當所得에 관한 限界消費性向 $c'=0.7$ 이라고 가정한다면 消費의 第1次의 變化額의 法人稅 變化額에 대하는 比率은 $0.7 \times (1-0.3) \times (1-0.6)=0.196$ 에 지나지

않는다는 計算으로 된다.

(4) 貯蓄에 미치는 補整的 措置⁽³²⁾

租稅로吸收되는 購買力이 貯蓄될 것이었던가는 租稅의 形態에 의하는 것보다 窮極에 있어서 租稅를 負擔하는 階級이나 때로는 最初의 納稅者의 經濟的 性格에 의해서 決定하는 것이다. 高價의 寶石에 대한 課稅는 貯蓄을 減少할 것이지만 빵에 대한 課稅는 주로 消費支出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경우 所得階層의 消費支出이나 貯蓄에 대해서 각각의 租稅伸縮性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므로 貯蓄을 抑制하는 課稅는

- ① 주로 貯蓄되어 있어야 될 所得에 課하는 租稅
- ② 投資資本의 收益을 減少하는 租稅
- ③ 貯蓄過程 그 自體를 罰하는 租稅
- ④ 貯蓄된 所得을 새 企業에 投資되기 前에 吸收하는 租稅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①에 該當하는 租稅는 高所得層에 適用되는 個人所得稅 및 高率의 事業所得稅이다. 累進所得課稅는 個人貯蓄을 減少시킨다. 法人稅는 法人貯蓄을 削減하거나 配當利潤을 減少케 한다. 配當利潤의 減少는 民間消費 및 所得을 減少케 한다. 그러나 法人稅가 留保利潤을 削減하는 정도는 작다. 法人の 配當을 受取하는 個人の 큰 部分의 貯蓄은 所得의大小에 따라서 增減하지만 法人稅에 의한 配當의 減少는 그들의 貯蓄을 減少해서 國民貯蓄의 總額을 減少한다.

② 貯蓄의 重要한 動機는 資本投資에서 생기는 收益의 期待이므로 投資所得에 대하는 課稅, 資產稅와 같이 資本으로부터의豫想收益을 減少하는 租稅는 必然적으로 貯蓄에 대한衝動을 抑制하며 그 結果는 經濟成長을 沮害한다.

③ 法人們은 課稅되지 않았다면 薈積하고 投資效을 利潤의一部를 高率配當 또는 特別配當의 形態로 配當하고 말 것이다. 配當을 受取하는 株主중一部人은 이 配當을 再投資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偶然利得이라고 보게 되어 普通으로는 購買하지 않는 物品의 購入에 使用하고 말 것이다.

④ 相續稅를 支拂하기 위해서 財產을 賣却하는 경우 購買人의 貯蓄은 新投資에 使用되는

(32) U.K. Hicks, *Direct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1956.

N. Kaldor, "Anti-Inflationary Implications of Alternative Forms of Taxation", 1952.

G. Colm, "Full Employment through Tax Policy (1940)" in *Essays in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955.

대신에 이 財產에 投下되어 다음 政府의 收入으로 된다. 特別히 高率의 戰時稅 國防稅등도 이 영향을 입는다. 一部人들은 高率의 租稅는 1,2年 계속할 것 뿐이라고 생각해서 生活水準을 引下할 생각은 않고 賯蓄을 찾아 使用하든가 投資物을 販賣해서 納稅한다.

貯蓄이 投資되지 않으면 經濟發展에 이바지 할 수 없다.

長期的觀點에서 볼때 貯蓄이 投資의 源泉이라는 것은 否定할 수 없으므로 貯蓄抑壓政策은 不可하다. 더우기 資本蓄積이 缺乏한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에서는 貯蓄抑制政策은 原則上 不可할 뿐만 아니라 預金利子稅의 課稅上 宥免措置는 必要不可缺의 措置일 것이다.

(5) 投資에 미치는 補整的 租稅措置

個人所得稅나 法人稅는 어느 것이나 貯蓄을 抑制하며 民間投資를 沮止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高率의 課稅가 長期的 貯蓄을 抑制할 때는 마침내 投資를 沮害한다. 高率의 累進所得稅가 課해지는 경우 高所得層의 所得은 相對的으로 減少하고 貯蓄이 減少되어 結果的으로 投資도 減少된다.⁽³³⁾

特定產業에 대한 輕減 免稅措置는 民間投資를 促進할 것이며 더우기 冒險的 投資에 대한 高速償却을 投資家로 하여금 租稅支拂로 因해서 喪失된 所得을 補填하기 위해서 큰 投資를 增加케 할지도 모른다(所得效果). 또 危險負擔에 대한 報酬의 減少로 말미암아 한층 安全한 危險負擔의 方向으로 投資를 增加시킬지도 모른다(代替效果). 이와 같이 租稅制度에 의해서 投資抑制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事業經營者는 投資함으로써 얻게 될 利潤外에 損失의 危險도 생각한다. 그러므로 高率의 事業所得稅도 危險이 많은 事業에 대한 投資를 沮害한다. 課稅가 全投資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租稅制度의 機構에 의해서는 어떤 投資가 嘉勵되는가 하면 그 反面 다른 投資가 抑制되기도 한다.

現實的 投資活動은 주로 個人的 所得이나 貯蓄에 直接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주로 金融機關을 통해서 행해지는 만큼 個人所得에 대한 累進所得稅의 投資抑制作用은 過大視할 것이 못된다.

法人稅는 利潤에서 支拂되는 한 自己投資資金을 減少시키고 投資量을 制限한다. 또 法人稅率의 引上이 企業活動을 委縮시킨다고 斷定할 수 없고 引下한다고 해서 投資活動이 進展될 까닭이 없다. 우리가 능히豫想할 수 있는 것은 留保利潤에 대한 課稅率이 높아지면 投資資金의 減少와 함께 投資意欲도 減退할 것이다. 租稅는 어디까지나 刺戟的 課稅로서 有效하다.

(33) R.A. Musgrave, "Fiscal Policy in Propensity and Depression",
G. Colm, "Full Employment through Tax Policy".

이와 같이 볼 때 法人稅率의 補整的 變更은 한편에서는 投資의豫想稅引후 收益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投資로 인해서 利用可能한 內部資金量을 變化시키는 경우도 있다. 民間投資에 미치는 第1次的效果는 위에서 말한 經路를 통해서 發現되나 먼저 第1의 經路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投資에 대한 收益性效果

法人稅의 補整的操作이 有效한가의 여부는 法人稅負擔의 增減이 民間投資에 대해서 強力한 第1次的效果를 끼치는가에 달려있다. 위에서 말한 簡單한 模型에 대해서 보면 限界投資性向 h 의 크기에 달려 있다.

資本財의 經濟的 耐用期間에 걸친 利潤의 現在價值의 極大化를 目標로해서 行動하는 企業을前提로 한다. 또 借入金의 利子는 稅法上 經費로 控除한다는 점을 無視함과 동시에 稅法上 完全한 損失相計規定이 設定되었다고 假定해 보기로 한다.⁽³⁴⁾

또 企業은 대개 確定의 年收入의 系列를豫想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企業이 投資의 採算性을 判斷하는 데 있어서 資本財의 取得費用 V 와 比較할 만한 것은 各年次의豫想稅引收益 R_1, R_2, \dots, R_n 의 現在價值의 總和 $B = \sum_{j=1}^n \frac{R_j}{(1+i)^j}$ 이다. 그러나 特定年度의豫想稅引收益은 資本費控除前의豫想稅引收益을 α_j , 이 投資에 대해서 稅法上 認定되는 減價償却額을 d_j , 法人稅率을 t^c 라고한다면 다음式과 같다.

$$R_j = \alpha_j - t^c(\alpha_j - d_j) = (1-t^c)\alpha_j + t^c d_j, \quad \dots \dots \dots \quad (13)$$

이 關係를 利用하면 B 는 다음形態로 될 수 있다.

$$B = (1-t^c)A + t^c D \quad \dots \dots \dots \quad (14)$$

단 위 式에서 $A = \sum_{j=1}^n \frac{\alpha_j}{(1+i)^j}$, $D = \sum_{j=1}^m \frac{d_j}{(1+i)^j}$ 이며, m 은 稅法上 要求되는 減價償却期間을 나타낸다. m 은 반드시 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 n 과는 合致하지 않는다.⁽³⁵⁾

또 이 m 年間의 減價償却費控除의 配分의 패턴도 稅法의 規定에 따라서 여러가지 形態를 취하게 된다. (14)式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과 같이 法人稅負擔의 現在價值는 다음 二項目의 差로써 알 수 있다.⁽³⁶⁾

第1은 減價償却費控除前의 年收益의 現在價值에다가 稅率을 適用하는 것에 의해서 얻게 되는 負擔이다.

(34) 損失相計制度란 企業의 純損失에 法人稅率을 乘한만큼의 金額이 稅務當局으로부터 企業에 대해서 즉시 還拂되는 제도를 意味한다.

(35) 法定耐用年數가 끝나지 않았는데 固定資產이 廢棄된 경우 未償却殘高를 最終年度에 經費로 控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m \leq n$ 으로 될 것이다.

(36) E.C. Brown, "Business-Income Tax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in *Income,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第 2 는 減價償却費가 控除經費로 認定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租稅還拂額(마이너스의 租稅負擔)의 現在價值이다. 이중 後者の 크기는 法人稅率을 주어진 것으로 한다면 稅法上의 減價償却期間과 償却方法에 依存한다. 따라서 一定稅率의 法人課稅에 의해서 投資의豫想稅引收益의 現在價值가 削減되는 程度는 減價償却規定에도 依存한다는 데 注意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資本財의 供給價格을 주어진 것으로 한다면 적어도 어떤 限界的인 資本量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A 는 分明히 資本財에 대한 支出額 V 의 增加函數이다. 그러나 投資額을 增加해 가는데 따라서 $\frac{dA}{dV}$ 의 값은 점차 低下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A'(V)>0$, $A''(V)<0$, 이에 대해서 D 는 大體로 投資額에 比例的으로 變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D=kV$ 라고 假定해 보면豫想稅引收益의 現在價值 B 는 V 의 函數이며 $B'(V)>0$, $B''(V)<0$ 로 된다. 그러므로 企業에 보다 有利한 資本量의 增加額은 投資費用를 초과하는豫想稅引收益 $\pi=B-V$ 의 値을 極大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必要條件은

$$\begin{aligned}\frac{d\pi}{dV} &= B'(V)-1=(1-t^e)A'(V)+t^ek-1=0 \\ \therefore B'(V) &=(1-t^e)A'(V)+t^ek=1 \end{aligned} \quad (15)$$

이 式은 最終 1 單位의 資本財增加로부터 얻게 되는豫想稅引收益의 現在價值가 그 資本財의 取得費用에 同等하게 될 때까지 資本量을 增大시킬 때 企業은 最適資本規模에 到達한다는 것이다.

위 式의 關係를 滿足하는 臨界的인 $A'(V)$ 의 値을 $A'(V)^*$ 로 表示하면

$$A'(V)^*=\frac{1-t^ek}{1-t^e}=1+\frac{t^e(1-k)}{1-t^e} \quad (16)$$

投資와 同時에 資本費用을 全額經費로 回收할 수 있는 即時償却의 경우에는 $k=1$ 로 된다. 이 경우에는 $A'(V)^*$ 는 항상 1에 同等하므로 法人稅率은 均衡資本量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現實의 稅制에서는 減價償却費의 回收는 여러 年度에 걸쳐서 施行되는 것이므로 傷却費의 現在價值는 投下資金額보다 반드시 작다. 즉 $1>k>0$ 이다. 이 條件下에서는 $A'(V)^*$ 의 値은 t^e 가 높을수록 크게 된다. 이것은 均衡資本量이 한층 작아야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現實의 資本量과 均衡資本量과의 値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一定期間에 計劃되는 投資額도 한층 작게 될 것이다.

一定한 減價償却法과 割引率을 假定한다면 t^e 의 여러 稅類의 値에 對應하는 $A'(V)^*$ 의 値을 計算할 수가 있다. 〈表 2〉는 割引率이 5%이고 殘存價值가 零의 直線(定額)償却法이 要求되는 경우에 대해서 計算結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稅法上의 減價償却期間이 极히 短期면 t^e 의 變化는 $A'(V)^*$ 의 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傷

〈表 2〉 여러가지 法人稅率과 減價償却期間下의 $A'(V)^*$ 의 値

償却期間 m	$k = \frac{A}{V}$	$A'(V)^*$ 의 値						
		$t^e=0$	$t^e=0.1$	$t^e=0.2$	$t^e=0.3$	$t^e=0.4$	$t^e=0.5$	$t^e=0.6$
1	0.9524	1.000	1.0053	1.0119	1.0204	1.0317	1.0476	1.0714
2	0.9291	1.000	1.0078	1.0176	1.0301	1.0469	1.0703	1.1054
5	0.8659	1.000	1.0149	1.0335	1.0575	1.0894	1.1341	1.2012
10	0.7722	1.000	1.0253	1.0570	1.0976	1.1519	1.2278	1.3417
20	0.6231	1.000	1.0419	1.0942	1.1615	1.2513	1.3769	1.5653
30	0.5124	1.000	1.0542	1.1219	1.2090	1.3251	1.4876	1.7314

註 : (1) 残存價值 零의 定額償却法을 假定.

(2) 割引率은 5%라고 假定.

却期間이 長期로 되는 데 따라서 t^e 의 影響力은 점차 크게 된다. 따라서 法人稅率의 變更이 投資에 미치는 效果는 各種의 產業分野에 대해서 中立의인 것은 아니다. 比較的 長期의 인 耐用年度를 갖는 資本資產의 比重이 큰 分野에 대한 영향이 한층 큰 것이라고 推測된다.

이상의 分析으로부터 結論을 現實的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몇가지 假定을 修正해야 된다. 우선 現實의 損失相計制度는 상당히 不完全한 것으로 하고 어떤 年度의 企業收益이 그 年度에 稅法上 認定하는 債却額을 下廻하는데 의해서 債却費가 전부 控除經費로 利用되지 못할 危險이 생긴다. 이것은 經費로 控除될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值 A 의 V 에 대한 比率 k 를 낮추는 것이 되므로 t^e 의 一定의 變更이 $A'(V)^*$ 에 대해서 부여하는 영향 따라서 投資量의 變化率을 增大케 한다.⁽³⁷⁾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收益豫想의 不確實性의 問題이다. 投資收益의豫想은 먼 將來일 수록 한층 不確實하여 더우기 가장接近하는 收益의豫想值自體도 한층 低下될 傾向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企業은 投資의 採算을 判斷하는 데 있어서 比較的 短期間의 收益만을 問題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不完全한 損失相計制度下에서는 稅法上의 經費로써 債却費를 完全히 利用할 수 없는 可能性을 重視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t^e (法人稅率)의 變更이 投資量에 미치는 영향력은 強力한 것이다.

損失相計制度의 存在는 投資가 失敗에 그친 경우에 그 損失과 相計되는 다른 所得이 있다면 法人稅는 還戻되지만 그 額은 t^e 가 높을수록 크다 하겠다. 따라서 理論的으로 본다면 높은 法人稅率은 投資의 私的 위험을 작게 하는 效果를 나타낸다. 投資家가 이 點을豫想

(37) $\frac{dA'(V)^*}{dt^e} = \frac{d}{dt^e} \left(\frac{1-t^e k}{1-t^e} \right) = \frac{1-k}{(1-t^e)^2}$ 따라서 k 가 작을수록 위 式의 值은 크게 된다.

收益의 割引率의 調整에 의해서 생각한다고 假定하면 法人稅率의 變更이 稅引豫想收益이 現在價值에 미치는 영향력을 弱化케 하는 것이다. ⁽³⁸⁾

세째로, 支拂利子가 稅法上의 經費로 控除되는 것이라면 投資는 全部가 自己資金으로 補充되는 한 法人稅率의 變化가 稅引豫想收益率에 끼치는 영향은 緩和될 것이다. 投資資金中 借入에 의해서 補充되는 部分의 比率이 높고 또 損失相計制度가 完全한 경우일수록 이 點을 重視할 것이다. ⁽³⁹⁾

收益性效果의 評價에 대해 논해 보면 法人稅率의 變更이 稅引豫想收益의 現在價值를 變動케 함으로써 投資意欲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론에 의해서 分明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補整政策으로서의 稅率의 操作에 관해서는 投資에 대한 收益性效果가 分明한가의 여부는 疑心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⁴⁰⁾

① 補整政策으로서의 稅率變更이 그 性質上 比較的 短期間인 것으로豫測된다면豫想稅引收益의 現在價值에 대한 稅率變化의 영향력은 弱化된다.

② 더우기 이러한豫測이 施行되는 경우에는 稅率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投資의 採算性의 判定基準으로 해서 稅包含收益率이 使用될지도 모른다.

③ 投資量의 增加에 따라서 $A'(V)$ 의 값이 急激히 低下하는 경우에는 稅率의 變化는 利子率의 變動과 同一하게 投資量에 별 영향을 받지 못한다.

④ 企業間의 競争이 活潑한 產業에 있어서 擴張投資라든가 合理化投資의 動機로서는 市場狹狀價格를 維持 혹은 擴大하면 欲求가 重要한 地位를 占하며 더우기 好況期에 있어서는

(38) R.A. Musgrave, "Effects of Tax Policy on Private Capital Formation."

(39) 投資資金中 借入에 의해서 補充되는 部分의 比率을 θ 라고 減價償却費控除중 θd 만이 每期末에 借入資金의 返還으로 된다고 假定하면 j 期의 借入資金의 未返還殘高는 $\theta(d_j + d_{j+1} + \dots + d_m)$ 으로 된다. 借入利子率을 i 라고 한다면 (13)式은 다음 같이 變更된다.

$$R_j = \alpha_j - t^c [a_j - d_j - i\theta(d_j + d_{j+1} + \dots + d_m)] \quad \dots \quad (13)' \\ \text{이 때 (14)~(16) 은 다음과 같이 된다.}$$

$$B = (1-t^c)A + t^cD + t^c\theta \frac{i'}{i} \left[\sum_{j=1}^m d_j - D \right] \quad \dots \quad (14)'$$

$$B'(V) = (1-t^c)A'(V) + t^c \left[k + \theta \frac{i'}{i} (1-k) \right] = 1 \quad \dots \quad (15)'$$

$$A'(V)^* = \frac{1-t^c}{i} \left[k + \theta \frac{i'}{i} (1-k) \right] \quad \dots \quad (16)'$$

$\theta=0$ 로 한다면 (16)'은 (16)式으로 還元된다. 분명히 θ 가 클수록 또 i 가 높을수록 t^c 의 一定한 變化가 $A'(V)^*$ 에 미치는 영향은 작게 된다. 極限의 경우를 생각해서 $\theta=1$, $i'=i$ 로 하면 $A'(V)^*$ 는 항상 1과 同等하다. 이 때 法人稅率의 높이는 投資計劃量에 대해서 全然 無關係이다.

(40) J. Lintner, "Effect of Corporate Taxation on Real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4.

그리하다. 이런 動機에 따르는 投資가 企業의 收益性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長期的인 觀點에서 判斷된다. 또 그것은 普通 漠然한 形態로서만 意識된다. 따라서 法人稅率의 引上의 收益性效果가 有效한 制約이 될지의 여부는 疑問일 것이다.

(5) 一定期間內에 企業이 實現할 수 있는 投資額은 經營能力, 資本財의 入手可能性, 資金의 調達ability 등의 各面의 障路에 의해서 制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 역시 好況期에 重視되어야 할 要因인 것이다. 이 要因에 의해서 制約되는 限界的 投資의 收益性이 높으면 稅率의 引上에 의해서 問題의 投資에 대한 稅引收益의 現在價值가 低下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採算範圍内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경우에는 投資量은 全然 低下하지 않는다.

이상 여러點에서 보아 補整的인 法人稅率의 引上이 民間投資水準에 끼치는 效果는 稅引收益力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作用하는 한 그다지 期待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不況期에는 企業은 投資의 採算에 한층 敏感하며 또 障路에 의한 投資量의 制限이 되는 問題도 重要치 않게 된다. 따라서 法人稅率의 變更의 收益性效果는 好況期보다 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有力한가의 여부는 역시 疑問이다.

(나) 投資에 대한 内部資金效果

다음으로는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이 内部資金의 利用可能性을 變化케 하는 것에 의해서 民間投資에 미치는 效果를 보면 過去에 蓄積된 流動資金을 別途로 한다면 企業이 投資를 위해서 利用할 수 있는 内部資金의 源泉은 價減償却充當金과 當期純利益으로부터의 内部留保등이다. 法人稅負擔이 引上되고 그것이 短期的으로 轉嫁되지 않는 것이라면 稅負擔의 增加의 大部分은 内部留保를 削減하는 데 의해서 支拂된다. 一定한 稅率의 變化에 基因한 内部資金의 減少率은 減價償却費에 대한 利潤額의 比率이 높은 好況期에 있어서는 不況期인 경우보다 한층 顯著할 것이다.

그러나 一部 慎重한 經營者는 固定投資를 위한 財源은 原則으로 内部資金에만 限定하여 한다. 이것은 企業에 대한 自己의 支配力を 確保하고 또 固定債務의 增加에 의한 經營의 不安定化를 回避하는 것을 重視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増稅의 資金效果에 의해서 投資가 抑壓되는 現象이 가장 分明히 나타날 것이다.

企業이 固定投資額의 一定比率 以上을 内部資金에 의해서 補充하는 政策을 취하는 경우에도 增加前의 投資計劃時의 内部資金比率이 最低基準에 同等하든가 하면 增稅의 投資에 대한 資金效果는 极히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상과 같은 경우를 別途로 한다면 企業은 增稅에 의한 内部資金의 不足을 外部資金에 의

(41)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해서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弹力的인 資金調達政策이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外部資金에 의한 投資에 대해서 企業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最小限度의 總收益率은 内部資金에 의한 投資인 경우보다 높다. 内部資金은 貸付할 수 있는 것이므로 經營者が合理的으로 생각한다면 市場利子率이 그 機會費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外部資金 특히 借入資金에 의한 投資의豫想收益率은 借入利子率外에 借入에 따르는 割増金을 保證하기에 充分한 것이라야 된다. 더우기 이 割増金은 借入額이 增大하여 自己資本比率이 低下하는 데 따라서 借入者가 遷增하기 때문에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内部資金이 増稅에 의해서 削減된다면 内部資金에 의하면 採算이 맞는 投資의 一部가 採算圈外로 脱落한다. 減稅의 경우에는 이와 反對로 内部資金의 增加가 投資를 刺戟할 可能성이 있다.

經營者が 樂觀的인 好況期에 있어서는 借入 위험은 낮게 생각하기 쉬우며 또 投資의 收益性에 대한 評價는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要因은 投資에 대한 増稅의 資金效果에 弱化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同時に 金融緊縮措置가 취해지는 것이라면 外部資金 특히 借入資金의 利用可能量이 制限되므로 増稅의 資金效果는 한층 強化될 것이다.

더우기 法人稅率의 變更은 株主의 所得이라든가 株價水準에 대한 影響을 통해서 外部資金의 供給條件를 어느 정도 變化케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法人投資에 대한 間接的效果는 内部資金의 變動에 의한 것보다 重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6) 法人稅率의 輕減措置

法人稅率을 引下하는 補整的 措置가 法人稅의 投資沮害를 緩和하는 가장 간단한 措置이며 이에 의해서 純收益率은 上昇한다.⁽⁴²⁾ 여기서 民間投資는 자연히 刺戟되며 이런 점에서 投資刺戟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法人稅制의 改革이 論議될 餘地가 있다. 물론 法人稅率의一般的인 引下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一定한 條件에 의한 負稅所得을 認定하자는 것이며 一部 產業에 있어서는 投資機會가 무수히 存在하는 한 일반적인 法人稅率의 引下보다는 一定額의 補整的 減稅措置로 인한 投資促進的 effect의 極大化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能率의이며 더우기 外資調達이 困難하고 自己資金의 貯蓄이 缺乏되어 成長率이 沮害되었을 경우에는 한층 適切하다. 또 法人稅收가 一定하게 維持된다고 하더라도 新產業의 實效稅率을 相對的으로 引下하는 租稅負擔의 再配分이 行해진다면 總投資의 質的構成에 政策의인 영향을 부여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投資總額이 增大할 것이다. 新產業의 相對的인 租稅負擔의 輕減措置는 技術的 革新을 促進하는 effect를 갖는다. 新設企業의 租稅負擔의 輕減措置는 企業相互間의 競争을 促進함으로써 技術進步에 공헌한다.

(42) A.H. Hansen, *Fiscal Policy*, 1947.

(7) 留保利潤의 輕減措置

減稅總額을 一定하다고 하면 一般的인 法人稅率의 輕減보다도 留保所得(利潤)에 減稅措置를 하는 편이 投資에 미치는 刺激的效果가 한층 크다.⁽⁴³⁾ 一部國家에서는 分配利潤보다도 留保利潤에 대해서 補整的 稅率輕減措置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課稅所得의 算定에 있어서 稅法上 寬大한 措置——價格變動準備金(在庫資產이나 有價證券이 將來에豫期치 않은 價格의 低落으로써 입을 損失에 對備하기 위해서 準備金을 設定한 것. 따라서 그 金額만큼 期間費用으로 算入되는 것은 물론이나 이러한 特殊한 準備金이 正當하게 設定되려면 稅法의 特別規定이 있어야 한다), 輸出損失準備金 등을 取하는 것도 實質의in 内部留保에 관계되는 稅率의 輕減措置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内部留保를 優待하는 減稅措置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内部資金의 充當에 대하는 誘因이 주어지기 때문에 投資促進的效果가 기대된다. 더욱이 内部留保의 蓄積은 自己資本比率을 높이는 데 의해서 外部資金에 의한 投資도 刺激한다. 이와같은 差別稅率을 導入하면 法人稅固有의 直接的in 投資沮害的效果가緩和될 것이다. 물론 企業의 利潤이 있다면 投資를 實施하겠지만 課稅가 부과되면 그만큼 利潤은 減少하고 이 減少의 정도에 따라서 投資는 決定된다. 즉 課稅後의 資本의 限界效率이 流動性選好의 限界率以下로 低下하게 된다. 企業所得과 同率로 課稅되는 때가 많으므로 일반으로 投資誘因은 企業利潤의 變動과 密接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企業의 投資量은 資本의 限界效率이 流動性選好의 限界率과 같은 點에서 決定되므로 課稅로 因해서 資本의 限界效率이 低下하면 投資量은 減少할 것이다.

Hicks(U.K. Hicks)는 留保利潤에 대한 輕減措置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利潤의 留保率이 好況期와 不況期에 있어서 前者の 경우가 높고 後者の 경우에 低下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安定政策의in 見地에서 본다면 마이너스效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8) 企業에 미치는 租稅措置

租稅는 때로는 企業의 集中이나 聯合을 促進하고 특히 租稅가 重한 경우에는 企業은 課稅를 契機로 해서 合理化에 의해서 租稅負擔을 排除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大企業은 合理化의 餘地가 많을 것이며 小企業은 餘地가 적기 때문에 점차 小企業은 崩壞되든가 大企業에 合併된다. 여기서 增稅되는 데 따른 企業의 集中이 促進된다.⁽⁴⁴⁾ 또 法人企業이

(43) U.K. Hicks, "Direct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1958.

(44) H.M. Somers, *Public Finance and National Income*, 1949, pp. 212-15.

J. Lintner, "Effects of a Shifted Corporate Income Tax on Real Investment", *National Tax Journal*, Sep. 1955. pp. 229-51.

E.C. Brown, "Business-Income Tax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in *Income,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1945.

個人企業에 比해서 輕課된다면 事實上 個人企業이 法人企業의 形態를 취하게 된다. 또 같은 會社形態라 하여도 合名會社形態를 취하는 事業이 株式會社形態를 취하는 事業보다도 重課된다면 順차 合名會社가 株式會社로 될 것이다.

(9) 加速度償却(acceleration depreciation)

減價償却控除을 固定資產의 耐久年限中 비교적 初年度에 集中고자 하는 償却法이다.⁽⁴⁵⁾ 이를 高速償却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定額償却法과 같은 정상적인 償却法에 比해서 償却費控除을 初年度에 集中해 하는 制度이다.

英國에서는 1945年 初年度特別償却(initial allowance)制度를 創設하여 新規建物에 10%, 機械設備에 20%의 特別初年度減價償却費의 控除가 稅法上 認定되었다. 戰後 世界各國에서 이 特別償却制度를 英·美에서 採擇했었다.

이 高速償却是 다른 償却에 比해서 多額의 減價償却費의 控除가 初期年度에 인정되는 것에 의해서 新投資收益에 관계되는 租稅負擔의 支拂時期를 延長할수 있는 利點이 있다. 인플레이션인 때에 있어서 貨幣價值가 한층 낮고 企業의 收益性이 한층 높은 將來에 租稅支拂을 延期하는 利益이란 대단한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法人稅率의 引上이 기대되는 경우 이런 租稅負擔의 延期는 企業에 있어서 한층 利益을 가져온다.

戰後 各國에 導入된 高速償却制度는 投資費用을 재빨리 回收함으로써 인플레이션下의 企業의 實物資本維持의 어려운 點을 救濟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高速償却是 投資費用의 輕減率을 높임으로써 正常償却일 때보다 投資誘因이 強하다. 더우기 高速償却인 때에는 輕減稅率의 一部가 利用되지 못할 危險이란 별로 啟다는 것을 보더라도 投資에 대한 誘因을 높인다.⁽⁴⁶⁾

成長經濟에 있어서는 企業의 粗投資額은 每年 增大하므로 租稅收入의 減少도 累積的으로

(45) R. Goode,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s as a Stimulus to Invest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55, p.198.

(46) R. Goode, *ibid.*, pp. 175-200.

E.D. Domar, "The Case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53. Reprinted in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pp. 195-222.

R. Eisner, "Changes in Methods of Depreciation and Their Effect", in *Federal Tax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pp. 515-27.

A.H. Hansen,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op. cit., pp. 181-83.

A. Smithies, "Federal Budgeting and Fiscal Policy" in *A 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 1948. p. 207.

E.E. Hagen, "The Problem of Timing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48. p. 422.

E.E. Hagen, "The Role of Economic Forecasting in Income Stabilization" in *Income Stabilization for a Developing Democracy*, p. 174.

增加해 가지만 後年の收入增加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高速償却도 投資를 條件으로 하는 것이므로 減稅措置의 一種으로 보아야 될 것이며 投資促進의 效果面에서 본다면 輕減稅措置보다도 한층 效率的이다. 그러므로 經濟的인 모든 弊害를 완전히 排除한 高速償却만이 希望되는 바이며 經濟安定이라는 觀點에서 보아도 이것은 最初 2, 3年에 特別償却費의 控除가 集中的으로 實施될 때는 投資率이 높은 好況時의 稅收增加가 抑制되어 不況時에 오히려 稅收가 增大한다는 危險이 생기게 된다.

(10) 投資特別控除

이것은 減價償却費控除는 물론이거니와 新投資額에 대해서도 一定比率의 特別控除를 初年度에 인정코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實質的인 償却效果를 올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下에 있어서 投資控除(investment allowances)를 採擇코자 하는 것이다. 이 措置의 投資促進的效果가 다른 措置에 比較해서 한층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措置가 投資補助金과 다른 點은 純利潤을 올릴 수 있는 能力を 가진 企業에 限해서 利益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制限은 浪費의 支拂이 補助金自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쉬운 까닭에 오히려 좋은 點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特定의 目的을 위한 投資를 促進하는 措置로서는 极히有效한 手段이다. 이와같은 投資控除制度가 넓은 適用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經濟安定의 인見地에서 보아 補整的인 調整措置가 必要하다. 가령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全體的으로나 部分的으로 어느 정도 停止해야 될 것이다. 英國의 例를 보더라도 投資促進의 必要가 높은 몇 種類의 資本支出을 除外하고 이 制度를 停止하는 措置가 대개 1956年에 인플레이션對策으로 使用되었다.

景氣調節의 手段으로서 特別投資償却을 하는 경우에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投資를 統制할 뿐만 아니라 規制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不利한 告知效果가 생길 위험 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景氣調節의 手段으로서 이 制度의 適用범위나 控除比率을 자주 变경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11) 結論

以上에서 우리들은 法人稅法上의 特別措置로 인해 法人企業投資가 어떻게 促進되는가를 보아 왔다.

法人稅의 投資沮害的 效果를 緩和하기 위한 措置는 投資에 대한 영향이 直接的일수록 또 内部資金의 蓄積을 자극하는 效果가 클수록 效率의이다.

그리므로 輕減措置보다는 留保利潤에 미치는 稅率의 輕減措置가 낫고 高速償却이나 特別投資控除은 이것보다 한층 낫다.

以上에서 經濟成長을 誘因하는 法人投資의 沮害的 效果를 究明하였으며 이 效果를 是正하는 政策에 대한 檢討가 實施되어 나왔다. 물론 이 法人投資의 解放의 길이 經濟成長을 誘因하는 全領域의 문제를 解決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法人所得에 대한 高率課稅는 經濟成長誘因의 沮害的作用을 除去하기 위한措置가 補整的租稅措置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課稅로 인한 經濟成長의 沮害的 效果를 緩和하기 위한措置로서는 法人稅에 대한 依存度를 낮추는 수 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最善의 길이 負擔輕減에 대한措置라고 主張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成長促進을 主眼點으로 생각하는 限間接稅收에 대한 依存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最適成長率을 實現하기 위해서 課稅로 인한 消費의 引下가 必要하다. 그러나 잘못하면 獨占資本의租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해서 이런措置가 남용될 危險이 크다.

高速償却이나 投資控除중 後者는 安定的 見地에서 補整的으로 調節될 必要가 있다. 投資促進特別措置가 中小企業에 대한 相對的 重課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負擔公正의 見地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리어 新設의 中小企業의 成長을 促進하기 위한 特別措置가 있으면 좋겠다.

이상에서 法人所得에 대한 高率의 直接稅는 經濟成長의 立場에서 본다면 經營放慢화의 위험이 생긴다. 이 惡影響을 除去하기 위한 새로운措置는租稅政策上 다른 重要目標의 달성을 沮害하는例가 많다. 그러나 稅率引上이 一時的措置라면 念慮할 必要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課稅로 인한 經濟成長에 대한 沮害的 效果를 緩和하기 위한 解決策으로서는 直接稅依存度를 낮출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經濟成長을 誘因하는 觀點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한 間接稅收에 대한 依存度를 높히는 데 賛同해야 된다. 그러므로 最適成長率을 實現하기 위해서 課稅로 인한 民間消費를 대폭 낮추어야 된다.

아울든 高率의 法人稅는 法人企業의 投資意欲과 投資能力을 阻害한다. 經濟成長의 誘因이라는 觀點에서 擔稅能力의 限界를 생각해 본다면 公共支出은 물론 그의 經常的支出도 間接直接으로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效果를 갖는다. 그러나 課稅에 의한 民間消費의 抑制가 再生産을 妨害한다면 擔稅能力이 絶對的인 限界에 到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成長政策의 點에서 보아도 擔稅能力의 限界點을 國民所得에 대한 課稅總額의 一定比率로 把握하려는 생각은 그 意義가 稀薄하다.

經濟成長을 誘因하는 補整的租稅政策의 見地에서 重視해야 될 문제는 最適成長率을 包含한 資源分配計劃과 이것을 實現하기 위한 政策手段으로서의 課稅水準과租稅構造가 原理에

어긋나지 않는 限度인 民主的이며 合理的인 點에 있다.

結論에서 稅制의 補整的 操作에 관해서 몇가지 問題點 특히 인플레이션對策에 대해서 指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政治的 可能性에서 볼 때 企業活動의 成果의 收穫期에 그 成果의 보다 큰 部分을 政府가 施行하려는 措置는 實業界側으로부터 強한 抵抗에 遭遇한다는豫想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은 經營의 效率을 低下케 한다는 反論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強調되는 것은 高率課稅下에서는 增加經費의 大部分이 實質적으로는 政府에 의해서 負擔되기 때문에 放慢한 支出이 實시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經營의 效率을 長期的인 競爭力의 維持나 強化등의 觀點에서 항상 重視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一時的인 高率課稅에 의해서 沮害되는가의 舉否는 疑心스러운 일이다.

세째로는 위의 이론과 關聯되지만 高率課稅下에서는 賃金이나 보너스의 引上要求에 대한 經營者의抵抗이 弱化되고 物價나 賃金의 上昇傾向이 強調된다는 論議가 있다. 그러나 이 論議는 充分한 說得力を 갖춘 것 같지는 않다. 増稅로 인해서 稅引後 利潤率이 低下한다면 賃金引上要求에 대한 經營者의抵抗은 오히려 強化될 可能성이 크며 勞動者側의 壓力은 緩和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째로는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은 一定한 經費控除에 基因한 稅負擔의 輕減額의 差異에서 보아 디플레이션期로부터 인플레이션期로 支出됨을 誘因한다는 問題가 있다. 가령 初年度에 高率의 償却을 認定하는 制度와 稅率의 補整的 操作이 結付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投資를 好況期로 集中케 하는 效果가 따를 것이다. 또 稅法上 經常費라고 認定되지 마는 그 効力은 상당히 長期에 걸쳐서 持續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支出, 가령 廣告費의 支出등도 可能한 好況期에 實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點은 인플레이션對策으로서의 法人稅率引上의 支出抑制效果를 弱化케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法人稅率의 補整的 操作이 民間支出에 대해서 부여하는 第1次的效果는 個人所得稅의 操作 그것보다 한층 確實性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法人企業의 價格政策이나 投資政策의 兩面의 反應이 複雜하며 또 不確定하기 때문이다. 또 第1次的 效果의 強度도 個人所得稅라든가 賃上稅의 같은 額의 變更의 경우보다도 劣勢의 可能성이 크다. 따라서 總需要에 대한 效果의 確實性과 強度라는 점에서 判斷하는 限에 있어서는 法人稅는 補整政策의 道具로서는 劣等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政治面에서 보면 實行의 容易性, 資源利用의 效率에 대한 영향이라는 點 등에서 보더라도 特別히 權獎할 價值가 있는 措置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法人稅의 補整的 操作은 중요한 長點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景氣變動의 源인 民間投資에 대해서 다른 財政措置보다도 큰 影響力を發揮한다는 點이다. 이 長點을 利用하기 위해서 法人稅負擔의 補整的操作에 대해서 稅率의一般的 變更이 아니고 投資獎勵를 위한 特別措置의 調整을 實行하는 方法을 생각하게 된다. 戰後 各國에서 高速償却(accelerated or rapid depreciation) 또는 加速度償却이라는 減價償却面의 優待措置가 채택되어 나왔다. 이런 措置는 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보다도 상당히 短期間內에 投下資本의 全部라든가 또는 大部分을 回收한다는 것을 稅法上 認定하는 것이며 投資의豫想稅引收益의 現在價值를 增大케 하는 效果를 가지게 된다. 더우기 成長企業에 있어서는 高速償却是 그 租稅負擔을 永續的으로 輕減하고 따라서 内部資金效果로 投資를 促進하는 方向으로 作用하게 된다.⁽⁴⁷⁾ 또 한편 投資를 奨勵하고 있는 一部 國家가 利用하고 있는 措置는 減價償却費와는 別途로 投資額의 一定比率을 課稅所得이나 혹은 算出稅額으로부터 控除하는 것이다. 가령 英國의 投資控除(investment allowances)라든가 혹은 美國에서 1962年에 採用된 投資稅額控除(investment credit)가 그 代表的인 例가 된다. 이러한 제도는 法人稅率과 控除率과의 높이에 따라서 投資費用의 一部를 政府가 負擔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投資의 探算을 改善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稅率을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内部資金效果도 일반적으로는 投資促進의이다.⁽⁴⁸⁾

高速償却이나 投資控除制度의 導入의 目的是 첫째는 資本蓄積을 促進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投資構造를 所望하는 方向으로 誘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일부 國家의 特別償却의 경우와 같이 投資의 質的 規制에 重點이 있다면 이것을 安定政策의 手段으로 操作하는 데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資本蓄積率을 長期의으로 높이는 것이 주된目的인 경우에는 投資獎勵措置를 好況期에 停止하고 不況期에 強化하는 것을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實際로 英國에 있어서는 初年度特別償却(initial allowances)이라고 불리우는 形態의 高速償却이나 投資控除가 國際收支의 危機에 당해서 여리번停止되어 나왔다. 또 美國에 있어서는 新投資에 대한 高速償却이나 投資稅額控除를 景氣政策의手段으로서 彈力的으로 運用하려는 提案이 여러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施行되고 있다.⁽⁴⁹⁾ 만일 이러한 種類

(47) R. Goode,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ances as a Stimulus to Investment," *Quarterly Journal Economics*, May 1955, pp. 191-220.

E.D. Domar, "The Case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Quarterly Journal Economics*, Nov. 1953, Reprinted in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48) E.C. Brown,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2, pp. 335-345.

(49) A.H. Hansen, "Economic Issues of the 1960's", pp. 34-35.

W.L. Smith,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 *American Economic*

의措置가採用되어나온다면그것이民間投資에미치는영향은상당히크게期待할수있을것이다.⁽⁵⁰⁾

Review, May 1962, pp. 304-306. (景氣政策에 미치는 投資稅額控除의 變更의 意義를 強調하고 있다).

(50) E. Mildner and I. Scott, "An Innovation in Fiscal Policy: The Swedish Investment Reserve System", *National Taxation Journal*, Sept. 1962, pp. 276-280.